第145回國會
(閉 會 中)

勞動委員會會議錄

第9號

大韓民國國會事務處

日 時 1989年3月20日(月)
場 所 勞動委員會

議事日程

1. 主要勞使紛糾懸案報告
   가. 서울特別市地下鐵公社
   나. 現代重工業(株)
   다. 其他長期勞使紛糾등問題

審査된案件

1. 主要勞使紛糾懸案報告
   가. 서울特別市地下鐵公社 ……1面
   나. 現代重工業(株) ……1面
   다. 其他長期勞使紛糾등問題 ……1面

(16時19分 開議)

○委員長 金令培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9次 勞動委員會를 開議하겠읍니다.

오늘 會議를 소집하게 된 經緯를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미 우리가 다 아는 바입니다마는 서울地下鐵勞使紛糾가 해결나지를 못하고 있읍니다. 지난 3月6日서부터 3月9日가지 無賃乘車시키는 勞使紛糾가 발생했읍니다. 그리고 3月16日 4時를 기해서 總罷業에 돌입하게 되고 同日 6時50分에 警察力을 투입해서 2,344名을 연행하기에 이르렀읍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 勞使紛糾는 해결되지를 못하고 있고 長期化 조짐으로 들어가고 있읍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난 18日 本 勞動委員會를 소집을 해서 政府側의 입장을 듣고 또 紛糾內容을 報告를 받고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이 해결책을 강구해야 옳았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8日 會議가 適期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 委員님들께서 地方에 출장도 가시고 또 연락이 제대로 안되어서 할 수 없이 오늘 會議를 소집하도록 이렇게 됐읍니다.

그리고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 長期勞使紛糾 業體의 使用者와 勤勞者側을 자진 출두시켜서 勞使紛糾 內容問題를 의견청취를 받고 質問해서 答辯도 듣고 가능하면 그 紛糾를 해결해 보는 방향으로 노력한 바가 있읍니다. 그런데 그것도 해결이 잘 안되고 현재까지 紛糾는 진행중에 있읍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現代重工業을 비롯해서 약 5個 會社 이렇게 됩니다. 이런 전반에 걸쳐서 그동안 勞動部를 통해서 그 내용을 아울러 듣고 해결책도 강구를 해봐야 되는 입장에 있읍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午後 2時에 開議할 예정이었읍니다마는 與黨인 民正黨側 內部事情에 의해서 4時로 會議時間을 연기했었읍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主要勞使紛糾懸案報告
가. 서울特別市地下鐵公社
나. 現代重工業(株)
다. 其他長期勞使紛糾등問題

(16時24分)

○委員長 金令培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主要勞使紛糾懸案報告를 上程합니다.

먼저 政府側으로부터 報告를 듣겠읍니다.

勞動部長官 나오셔서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長官 張永詰 존경하는 金令培委員長님 그리고 勞動委員會 委員님 여러분! 최근 서울地下鐵公社 및 現代重工業 등 일부 業體의 勞使問題가 勞使當事者間의 自律的인

對話와 協商을 통한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고 長期間 지속됨으로써 市民의 불편과 社會的、物議를 야기시킨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政府는 진행중인 勞使紛糾를 조속한 시일내에 원만히 해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한편 今年度 賃金交涉過程에서 예상되는 勞使間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地域別 業種別 共同交涉 방식을 활용하는 등 行政指導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읍니다.

아무쪼록 委員님 여러분들께서도 積極的인 협조와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地下鐵公社와 現代重工業株式會社의 紛糾現況을 준비된 油印物에 의거 양해해 주신다면 企劃管理室長으로 하여금 報告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勞動部企劃管理室長 鄭東佑 企劃管理室長입니다.

報告드리겠읍니다.

……

(報 告)

目 次

Ⅰ. 서울地下鐵 勞使紛糾 現況 및 對策

Ⅱ. 現代重工業 勞使紛糾 現況 및 對策

Ⅰ. 서울地下鐵 勞使紛糾 現況 및 對策

事業體 概要

○所 在 地 : 서울市 瑞草區 方背洞 647-7

○代 表 者 : 김 명 년

○業 種 : 運 輸 業

○勤 勞 者 : 7,500名

○勞動組合 : 組合長 정윤광 5,983名 '87.8.12 設立

1. 紛糾發生 背景

○'88.10.5 勞使가 다음 10個項에 合意하고 合意覺書 作成

〔合意覺書內容〕

1) 改編職制에 의한 3號俸(33,000원) 基本給與 包含

2) 公社의 職務分類 施行

3) 勤務形態 變更(8시간 근무제 정원조정 주휴일 및 법정 공휴일등)과 報酬制度改善을 '89.1부터 施行

4) 地下鐵 勤務手當의 基本給化를 '89.1부터 施行

5) 公社의 人事考課 評定基準 合理化

6) 調整된 職級別 職位評定 '88.1부터 遡及 施行

7) 職級別 昇進所要 年數確定

8) 號俸間 隔差調整은 '89年부터 施行

9) 組合員의 加入範圍 確定

10) 現業勤務者의 作業環境 및 勤務環境의 改善

○合意覺書內容中 '88年에 6個項이 履行되고 '88年末까지 다음의 4가지 事項이 履行되지 않음

未履行事項

1) 3號俸(33,000원) 加算分의 基本給化에 따른 賞與金 引上分 支給

3) 勤務形態의 變更(8시간 勤務制)과 報酬制度의 改善(基本給의 改善 定率手當의 定額化)

4) 地下鐵 勤務手當의 基本給化

8) 號俸間 隔差 調整

○"정윤광"이 第3代 組合長으로 當選('89.2.3)된 후 '89.2.21勞組 擴大幹部會議에서 未履行事項에 대한 履行 促求決意

2. 紛糾進行狀況

○'89.2.28 勞動爭議 發生申告(中勞委 勞動部)

- 이날 바로 本社 廣場에서 合意覺書 履行促求大會를 開催하고 事務室 占據籠城

○3.6－3.9 地下鐵 無賃乘車 誘導

○3.8 爭議行爲 贊反投票結果 94.3% 贊成으로 可決

○3.16. 4：00 罷業突入

3. 紛糾收拾 措置事項

〔勞 動 部〕

○合意覺書 履行과 勞使協議에 의한 解決指導

2.28 公社側 3號俸(33,000원)의 基本給化에 따른 賞與金 引上分 支給

○3.14 公社側의 要請에 따라 中央勞動委員會가 職權仲裁 回付

〔서 울 市〕

○3.7 3.8 서울市長과 勞組代表의 協議結果 서울市가 勞組의 要求事項을 大幅 受容하였으나 市長의 保證署名 問題로 決裂

＊서울市長 約束事項

· 地下鐵 勤務手當의 基本給化는 3.20까지 施行
· 勤務形態와 報酬制度 改善은 5.30까지 施行
· 職能別 號俸給은 地下鐵 勤務手當의 基本給化後 再算定하여 卽刻 施行

○3.10 公社社長이 組合長등 勞組幹部 23名을 無賃乘車 實施와 關聯 警察에 告訴

○3.15 서울市長과 勞組代表와의 마지막 協商 決裂

*勞組側 要求事項
· 서울市長의 合意文 署名
· 勞組幹部들에 대한 告訴 取下
· 김명년社長의 退進
· 배일도 前組合長 釋放

[警 察]

○3.16 總罷業直後 籠城中인 勞組員 2,345名 連行

○措 置 : 拘束 14名 不拘束 32名 訓放 2,275名 調査中 24名 등(3.18 現在)

4. 勞使의 立場

[勞 組 側]

○3.16부터 平民黨과 民主黨에서 철야 농성중(平民黨 500名 民主黨 700名)

○3.16 勞組臨時執行部를 構成(委員長 權限代行 서창호)

拘束者 釋放 등 要求條件 貫徹時까지 作業復歸 拒否 決意

[公 社 側]

○3.18 7:00까지 作業復歸 命令

未復歸者에 대해서는 罷免 등 懲戒 警告

*地下鐵 運行狀況
· 1號線 : 정상운행
· 2 3 4號線 : 제한운행

5. 指導方向

○組合員의 早速한 作業場 復歸를 誘導하여 地下鐵 정상운행 圖謀

○勞組組織과 活動의 조속한 正常化

○勞·使間 爭點에 대한 中勞委의 신속한 仲裁決定과 合意事項의 早速한 履行 指導

*3.21 中勞委에서 第1次 仲裁委員會 開催 豫定

Ⅱ. 現代重工業 勞使紛糾 現況 및 對策

事業體 概要

○所 在 地 : 경남 울산시 전하동 1
○代 表 者 : 박 재 면
○業 種 : 船舶建造業
○勤 勞 者 : 22,800名
○勞動組合 : 조합장 서태수 19,125名 '87.7.21 設立

1. 概 觀

○'88.6.1 勞動組合이 提示한 136個 項目의 團體協約案을 놓고 90여회의 勞使交涉을 進行하였으나 退職金 累進制 등 4個項 未合意로 결렬되어 12.12 勞組側이 全面罷業에 突入하였음.

○罷業을 契機로 勞使交涉過程에서 심화되어 오던 "서태수" 組合長의 現 執行部와 "이원건" 副組合長을 중심으로 한 反執行部間의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勞組가 양분되었으며

'89.1.8 現代系列社 勤勞者 집단테러사건까지 發生함으로써 勞·勞間 및 勞·使間의 감정대립까지 겹쳐 紛糾解決은 더욱 어렵게 됨.

○최근에는 操業參與 問題를 놓고 組合員間에 集團衝突이 頻發하는등 紛糾가 長期化되고 있음.

2. 主要爭點

○當初에는 團體協約案 未合意 4個項이 爭點이었으나 罷業過程에서 解雇者 復職問題가 提起되고 勞·勞紛糾가 표면화 되면서 "이원건" 罷業指導部의 勞組代表性 認定問題와 紛糾 長期化에 따른 罷業期間中 賃金問題가 追加됨.

· 爭點事項

團體協約 未合意 4個事項
賞與金 100% 追加引上(現 500%) 退職金累進制 週 44時間 勤務 諸手當 新設

· 追加爭點

解雇者 原職復職(8名中 4名 系列社 就業)
勞組代表性 問題
罷業期間中의 賃金支給問題

3. 紛糾進行狀況

가. 罷業 및 勞·勞對立

· 12.8 團體協約案 爭議行爲에 대한 未

合意事項을 理由로 組合員 贊反投票를 實施(가결)한 후 12.12罷業에 突入

○ 12.19 "서대수"組合長이 長期罷業은 勞使 兩側에 損害 라는 理由로 罷業中斷을 發表하였으나 "이원건"등 反執行部 組合員들은 "서대수"組合長을 비난하여 作業 妨害함으로써 正常操業이 霧散됨.

○ 12.21 "이원건"등 反執行部側이 "서대수" 組合長을 危脅하여 組合長 權限을 委任케 함.

○ 12.23 會社側은 操業이 不可能하다고 判斷하고 操業中斷을 公告

○ 12.30 慶南道는 防衛産業體 不法 爭議 行爲 中止를 警告

○ '89.1.6 "이원건"側은 總會를 開催하고 "서대수"組合長 不信任 결의

1.8 現代重電機 勞組員 구타사건으로 勞使關係 惡化

나. 正常操業을 위요한 紛糾

○ '89.2.11 會社側은 操業을 再開함.

操業再開措置 이후 매일 12,000여명의 勤勞者가 出勤하였으나 罷業指導部와 동조 組合員의 妨害로 正常操業은 안됨.

○ 이 過程에서 罷業組合員과 管理職 社員 등 操業勤勞者間에 衝突事例가 수차례 發生(負傷者 220名)

○ 會社側은 罷業 組合員側의 作業妨害, 暴行 등 不法行爲 處罰을 要求하며 關聯者 145名을 告訴함.

○ 2.23 罷業指導部 "이원건"등 5名에 대해 事前拘束令狀이 發付되어 이중 2명이 警察에 檢擧 拘束됨.

다. 最近의 動向

○ '89.3.14 罷業指導部는 組合員 12,400여명의 서명을 받아 組合長 不信任 勞組規約 改正 새執行部 構成을 위한 總會召集 要求書를 서대수側에 우편으로 接受

○ 3.14 罷業 組合員들은 操業을 妨害하기 위하여 作業中인 해양 1공장 박성봉등 任職員 및 勤勞者 23名을 구타하고 이를 말리던 전익관 理事등 55명을 회사버스로 罷業勤勞者들이 농성하는 室內體育館으로 데리고 가 머리에 汚物을 붓는등 過激行爲를 함.

○ 3.15 罷業指導部側은 總會 召集 해태를 理由로 울산시에 臨時總會 召集權者 指名要請書를 提出하였으나 懈怠事由에 대한 根據 未備로 반려됨.

○ 3.17 서대수側은 總會召集要求 署名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正當하게 이루어진 것이 確認되면 臨時總會를 召集하겠다고 "이원건"에게 通報

○ 3.15 會社側은 "이원건"등 事前令狀 發付者 5명을 包含 55명을 懲戒키로 決定하고 이중 19명은 당일 懲戒委員會에 회부하였으나 對象者 不參으로 3.22까지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음.

4. 紛糾收拾 措置狀況

○ 勞動部는 現代重工業의 事態收拾을 위해서는 "서대수" 組合長과 "이원건" 罷業指導部側間에 勞·勞紛爭을 解消시킨 후 正常作業에 임하면서 勞使間에 懸案問題를 중심으로 한 團體協約締結을 주선한다는 方針아래

1.27 特別指導班을 現地에 派遣 "서대수"側과 "이원건"側과의 접촉과 說得을 통해

2.2 勞組事務室에서 勞組 兩側 代表 5명이 參席한 연석회의를 개최하였으나 견해차이가 커서 合意點을 찾지 못함.

○ 2.24부터 3.2까지 5차에 걸쳐 울산시장과 蔚山地方勞動事務所長이 勞·勞間의 協商을 주선하여 勞使交涉을 위한 單一團構成과 "서대수"組合長의 退陣保障등에 暫定合意에 도달하였으나 "이원건"측이 번복함으로써 勞·勞·使間의 協商이 교착상태에 들어감.

○ 3.10 國會勞動委에서 現代重工業 勞使紛糾 審問會를 開催하고 國會次元의 任意 仲裁를 2次에 걸쳐 試圖하였으나 使用者側과 勞組執行部側의 不參으로 무산됨.

5. 勞使의 立場

| 執行部側 |

○ 操業에 임하면서 規約에 의한 合法的이고 正常的인 總會召集 要求는 受容할 態勢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召集拒否 意思

○ "서대수" 退進을 前提로 勞組 殘務整

理期間 經過後 總會開催意思 表明

反執行部側

臨時總會를 開催하여 새執行部를 構成한 후

勞使協商을 전개하여 懸案問題와 團體協約을 해결한 후 操業正常化 開催

會 社 側

臨時總會 召集 등 勞動組合 改編에 不關與 意思 表明

다만 여하한 이유로도 操業妨害 行爲에 대하여는 강경 對應

會社 重役 및 操業勤勞者에 대한 暴行 作業妨害 등 不法行爲에 대한 公權力의 소극적인 對應에 強한 不滿

6. 指導方向

本部 特別指導班 現地 派遣

① 早速한 시일내에 臨時總會를 召集토록 하여 新執行部가 構成되도록 指導

② 臨時總會 召集과 同時 操業正常化 誘導

③ 勞·使 協商을 再開하여 조속 妥結

④ 器物破壞 暴力 操業妨害등 不法行爲 依法措置

……

油印物에는 없읍니다마는 전번 會議때 3月10日로 기억됩니다마는 「모터로라코리아」 또 大宇精密에 대하여 여러 委員님들이 지적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그간 조치를 간단하게 報告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모터로라」는 不當勞動 행위에서는 3月13日부터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嫌疑事實이 인정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여러 委員님들이 말씀하신 뜻에 따라서 3月18日 서울地檢 東部支廳에 送致를 했읍니다.

또 作業環境 실태에 대해서는 그 날 時間餘裕를 주셨기 때문에 3月13日부터 各 作業環境 分野別로 專門家 10名을 구성해서 調査班을 투입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本格的으로 分野別로 조사를 하고 있읍니다.

이 결과가 나오는 즉시 별도로 報告드리도록 하겠읍니다.

大宇精密에 대해서는 特別指導班을 3月18日 현지에 파견했읍니다. 組合總會를 통해서 勞使交涉에 있어서 代表權을 委任받도록 주선하면서 勞使 當事者의 對話를 적극 주선해서 懸案問題를 조정기도하고 있고 오늘도 李仁濟委員님께서 勞動委員會에 불러서 紛糾收拾을 위한 調停案을 제시하고 수고를 해주셨읍니다마는 아직까지 결말을 못보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상 報告를 마치겠읍니다.

○委員長 金令培 다음은 勞動部의 報告에 따른 委員님들의 質疑가 있겠읍니다.

먼저 平和民主黨 所屬 韓光玉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光玉委員 平和民主黨所屬의 韓光玉委員입니다.

먼저 서울地下鐵公社紛糾에 대해서 質疑를 하고자 합니다.

서울地下鐵公社에 대한 紛糾問題는 어제 오늘의 事件이 아니고 이미 昨年 10月에 접어들어서 또 그전에 올림픽大會를 치르느냐 못치르느냐 하는 그러한 危險水位까지 중요한 점점까지 올랐던 문제가 바로 이 서울市의 地下鐵問題입니다.

그 때 與野委員들의 獻身的인 노력을 통해서 또 각 黨의 노력을 통해서 서울市와 또는 地下鐵公社와 勞組間의 원만한 합의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今年에 다시 들어와서 2月에 다시 執行部가 구성되어 가지고 鄭允光委員長을 중심으로 해서 執行部가 구성이 되었는데 이 合意覺書에 대한 이행을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地下鐵公社에서 전혀 이행을 하지 않는 데서 또다시 紛糾가 재연되었던 것입니다.

우선 이 한가지만 보아도 이 地下鐵公社가 얼마만큼 勞使關係에서 團體協約을 무시했고 勞動者들의 權益을 외면했는가를 단적으로 입증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中間評價의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 있지만 서울地下鐵 勞組의 紛糾事件이 서울市民에게 불편을 주고 또한 公權力이 介入되어 가지고 社會秩序를 혼란시키는 양 마치 勞動者들이 秩序를 문란시키고 파괴하는 양 國民들에게 호도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強硬局面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反射利益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政治的인 어떤

목적이 있지 않는가 이런 오해도 있었읍니다.

그런데 本委員이 지난 18日에도 서울市長을 만났읍니다마는 서울市에서는 이미 자기들의 노력의 한계가 지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읍니다.

먼저 勞動部長官께 質疑코자 하는 것은 어쨌든 主務長官으로서 서울市의 地下鐵勞組의 紛糾가 일어난 이후에 長官으로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를 먼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長官 張永喆 勞動部長官 答辯드리겠읍니다.

韓光玉委員님께서 여러 가지 地下鐵의 그동안의 지난해부터 地下鐵紛糾에 대한 여러 가지 問題點과 현재 당면하고 있는 問題點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읍니다.

저희 勞動部에서는 地下鐵이 千萬 우리 市民들의 발이고 해서 어느 분야보다도 重要性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저희 勞動部로서는 公社로 하여금 10月5日 合意覺書 내용을 우선 이행하도록 지도하고 2月28日 公社가 3號俸의 基本給化에 따른 賞與金 引上持分을 지급하도록 했고 또 勞組側에는 法 秩序의 테두리내에서 주장을 관철하도록 지도하였으며 勞使 공히 中央勞動委員會에 仲裁申請하도록 하여 仲裁調停에 따르도록 지도해 왔읍니다.

○韓光玉委員 本委員이 보기로는 서울市와 地下鐵公社와 勞組關係의 紛糾를 보면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보다는 다시 말해서 여기에 지금 적시되어 있는 未解決問題 3號俸의 3萬3,000원의 加算金의 基本給化에 따른 賞與金 引上分의 지급 그 다음에 3項에 勤務形態의 변경과 報酬制度의 개선 그 다음 4項의 地下鐵 勤務手當의 基本給化 그 다음 8項의 號俸間의 격차조정 이것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지난번에 紛糾가 됐읍니다마는 地下鐵의 紛糾를 서울市나 勞動部나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오히려 이것을 더욱 격화시켜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根本的인 本質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勞動者들의 問題點을 더욱 부각시키려고 하는 다시 말하면 暴力行爲다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양 이렇게 유도하는 것이 증거로써 제시가 돼 있읍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市와의 마지막 團體交涉이 3月15日 아침 11時부터 午後 4時까지 交涉이 있었는데 벌써 서울市에서는 各 班常會를 통해가지고 각 집집마다 油印物을 뿌렸읍니다. 그 油印物에 보면 市의 입장을 변호하는 그러니까 市에서는 市와 地下鐵公社에서는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地下鐵勞組에서 부당하게 요구를 한다고 하는 내용의 油印物을 뿌렸읍니다.

이것 한 가지만 봐도 서울市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보다는 오히려 市民들에게 불편을 주는 勞動者들에게 불평 불만을 國民들이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호도하는 班常會報를 봐도 이것은 진실로 勞使問題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 이런 것으로 本委員은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長官이 아는바대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長官 張永喆 韓委員께서 여러가지 말씀을 하신 중에 저희 勞動部나 서울市에서 정말 市民의 발인 특별히 庶民生活의 발인 地下鐵을 勤勞者들을 호도하기 위해서 해결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政府에 있는 입장이나 또한 國民으로서 또 서울市에 사는 市民으로서 그것은 있을 수 없다고 단호히 말할 수가 있읍니다.

그리고 班常會에 대한 문제도 이미 서울市에서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 뜻을 제가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그것은 市民의 발이 勞組에서 16日부터 파업을 한다 하니까 이러이러한 불편한 점을 또 交通에 대한 여러가지 말을 하면서 그당시 경위를 市民에게 알리는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韓光玉委員 長官으로서는 그러한 答辯을 할 수밖에 없는데 本委員이 입수한바에 의하면 이미 交涉은 形式的으로 한 것이고 班常會를 통해서 市의 입장을 이제 말한대로 표현하는 그런 것으로서 同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이미 저희들은 간파를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 묻겠는데 勞動者의

권익을 보호하고 또 勞使問題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行政力을 동원한다든지 또한 公權力을 동원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항상 대두되는데 이 地下鐵問題에 대해서 公權力을 요청한데 대해서 主務長官으로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長官 張永詰 예. 答辯드리겠읍니다.

民主化時代에 부응하여 勞使問題를 治安次元에서가 아니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勞使 當事者間 自律的으로 해결되도록 함으로써 성숙한 勞使關係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主要 防產業體라든가 公益產業體 등등에서 不法的인 파업이 빈발함으로써 勞使關係의 基本秩序는 물론 經濟社會秩序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국면에 이르게 되었읍니다.

지난 3月16日 서울地下鐵勞使紛糾의 경우 中央勞動委員會의 仲裁回附決定에 따라 그날로부터 15日間은 냉각기간으로 爭議行爲가 금지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不法罷業을 감행하여 公益產業으로서 社會的 기능을 스스로 저버림으로써 1千萬 서울市民의 불편을 야기시켰읍니다.

앞으로 政府는 勞使間의 모든 紛爭이 勞使當事者間의 交涉을 통하여 法秩序 테두리 내에서 해결되도록 지도하여 나가겠으며 폭력 파괴 등 法秩序를 벗어난 勞使紛糾에 대해서는 勞使 공히 엄중히 처벌할 것입니다.

○韓光玉委員 本委員이 참 마음으로부터 勞動部長官이 참 同僚委員으로서 새로 취임해 가지고 勞使問題뿐만 아니라 좀더 나은 勞動行政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마는 현재의 사실상 長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심히 유감된 여러가지 勞動行政이 분출되고 있다고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또한 걸들여서 아직도 우리나라의 勞動行政이 폭력을 위주로 하는 폭력을 폭력으로 대하는 다시 말해서 物理的인 힘으로써 勞使問題를 다루려고 하는 시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어떤 점에서는 治安的인 차원에서 다스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명백히 드러나고 있읍니다.

지금 이번의 勞使紛糾에 있어가지고 2,300餘名정도를 연행했는데 이러한 예가 이제까지 있었던 적이 없었읍니다. 오히려 더욱 勞使問題가 원만하게 對話 설득으로써 풀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힘에 의해서 公權力의 행사에 의해서 해결하려 하는 것이 입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政府의 根本的인 자세가 시정되지 않는 한 악순환이 계속된다.

다시 말해서 어떤 勞使紛糾가 일어나게 되면 그 本質的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國家에서는 公權力을 동원해서 잡아넣고 또 勞組員들은 다시 석방해달라고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勞使紛糾가 長期化되고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두고 볼것이냐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많은 사람이 拘束이 되고 連行이 됐는데 일단 지금 현재 제가 길게 얘기 하지 않겠읍니다마는 저희 平民黨을 비롯해서 民主黨 또 各黨에 많은 勞動者들이 지금 와 있읍니다. 그들의 한결같은 요구는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拘束者들을 석방을 해주고 이번 勞使紛糾로 인해서 야기된 어떤 刑事的인 문제 이러한 責任問題는 묻지 않고 平和的으로 대화 설득을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하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地下鐵公社나 서울市當局이나 勞動部에서는 대화하려고 하는 자세가 지금 보이지 않고 있읍니다. 그냥 내버려두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너희들 해볼테면 해봐라 어디까지 너희들이 버티는가 이런 자세란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내가 長官께 묻겠읍니다. 계속 勤勞者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拘束者의 釋放問題 그 동안의 刑事的인 또 여러가지 法的인 문제 이러한 문제들을 불문에 붙이고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그 문제를 가지고 正常操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는지 안하겠는지 長官의 견해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長官 張永詰 韓光玉委員님께서 質疑

하신데 대해서 제 자신도 참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勞動行政의 根本 원칙이 勞使의 產業平和를 기함으로써 참 韓國經濟라든가… 특별히 地下鐵같은 경우에는 서울市民의 발이 되어서 정말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고 또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지금 서울地下鐵의 勤勞者들의 拘束問題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서울市와의 勞使間의 交涉過程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器物의 파괴라든가 無賃乘車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는 勞使間에 協議를 하는 과정에서 서울市長이 파업을 하지 않고 正常的인 操業을 하면 關係當局의 法에 대한 執行問題는 사실은 벌써 告發이 된 상대니까 그 執行問題는 檢察에서 할 문제지만 正常的인 操業을 하면 關係當局에 그뜻을 전하겠다고 하는 말씀도 했읍니다. 제 자신도 그러한 서울市長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읍니다.

○韓光玉委員 그런데 勤勞者들의 이야기는 正常操業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의 조건이 있읍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이미 合意覺書에 대한 이행문제는 오늘부터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拘束者들… 鄭允洸勞組委員長을 비롯한 拘束者들에 대한 석방과 이번에 手配者 解除問題 또 여타 法的인 問題는 불문에 붙인다고 하는 문제 이러한 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操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데 政府側에서는 操業에 들어가게 되면 그 문제를 고려해 보겠다 그런 얘기지요 지금?

○勞動部長官 張永喆 예.

○韓光玉委員 그런데 그 순서를 바꿔가지고 斷案을 내려서 이제 大統領께서도 오늘 中間評價問題라든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참 소위 대화와 갈등없이 원만하게 政局을 運營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 표명이 있었는데 長官도 이 기회에 이 문제를 좀 더 순서를 바꿔가지고 斷案을 내려서 이번의 紛糾에 가담된 또 紛糾에 관련된 刑事問題를 白紙化시켜가지고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시킬 수 있는 용의가 없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長官 張永喆 그것은 대단히… 사실은 그런 문제가 안타깝습니다마는 勞動部長官으로서 그러한 法上의 문제는 사실은 法을 다루는 분야에서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韓光玉委員님께서 말씀하시는 충정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알겠읍니다마는 그것은 저에 대한 所管分野가 아니기 때문에… 韓光玉委員 뜻만은 충분히 알겠읍니다.

○韓光玉委員 문제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主務長官으로서 이 문제를 계속 長期化되기를 바랄수는 없지 않겠읍니까? 그렇지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지금 國務總理도 자기 입장에서 곤란하다. 또 서울市長도 자기 한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 또 지금 主務長官인 勞動部長官도 곤란하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勞動部長官 張永喆 그것은 勞使間의 當事者라고 봅니다. 그래서 勞使間 當事者間에 대화를 통해서 무엇이 市民의 불편이 없도록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勞使間의 當事者問題라고 봅니다.

단 政府에서 이것이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조정역할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韓光玉委員 長官께 또 묻겠읍니다.

서울市에서 제가 듣기로는… 서울市當局者의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서울市와의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노력하던 분들이 많이 있읍니다. 우리 黨에서 여기 李相洙委員 李海瓚委員 또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他黨에서도 계시는데 大統領께서 서울市의 巡視중에 勞使問題에 대한 강경한 언급이 있었읍니다. 그래가지고 이 문제가 잘 풀려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에 오히려 강경으로 선회하는 계기를 만들었읍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 本委員이 판단하기로는 大統領의 고도의 政治的 판단만이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長官께서 本 會議가 끝나면 大統領을 만나가지고 이러한 問題點을 해결하기 위해서 大統領의 고도의 政治的 판단을 建議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長官 張永喆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法을 지켜야 된다하는 遵法秩序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國民生活에 아주 불편을 준다든가 하는 입장에서의 문제와 法을 지켜야 한다는 문제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韓光玉委員 그러니까 그럴 용의가 없다는 얘기에요?

○勞動部長官 張永詰 그것은 勞使間에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서울市와 政府次元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韓光玉委員 어쨌든간에 地下鐵勞使關係의 갈등은 빨리 해소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이 紛糾는 빨리 지양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長官이 무언가 노력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長官으로서 어떻게 노력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長官으로서…

○勞動部長官 張永詰 長官으로서 할 수 있는 한도는 서울地下鐵과 勞使間의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韓光玉委員 제가 보기에는 서울市長만의 능력을 가지고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또 本部長官만의 힘만으로서도 어렵고 또 國務總理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長官께 다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마는 이 문제를 가지고 大統領을 만나셔서 고도의 政治的인 판단과 결단을 촉구해 주기를 거듭 내가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곁들여서 우리가 지난번에 現代重工業에 관해서 우리가 質疑를 했고 또한 거기에 勞使間에 원만한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本委員會에서 李相洙委員하고 몇 분이… 李康熙委員하고 두 분이 조정을 했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會社側에서 아무런 성의도 보이지 않고 또 지금 現代重工業의 紛糾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선 長官으로서 그후에 現代重工業의 紛糾事態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으며 왜 이렇게 심화되고 있는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長官 張永詰 勞動部로서는 現代重工業의 사태수습을 위해서는 서태수組合長과 李元健 反執行部間의 勞勞紛爭을 해소시켜 勞組의 기능을 正常化한 후 正常作業에 임하면서 勞使間의 懸案問題를 중심으로 한 團體協約體制를 주선한다는 방침 아래서 本部에 特別指導班을 現地 파견 조속한 時日내에 臨時總會를 소집토록 하여 新執行部가 구성되도록 지도하고 臨時總會의 소집과 동시에 操業正常化를 유도하면서 勞使協商을 재개하여 조속 타결이 되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勞動部의 그간 現代重工業紛糾 수습을 위한 措置事項은 蔚山地方勞動官署에서 88年12月2日부터 89年1月14日까지 11次에 걸쳐 過激示威 자제촉구 및 勞組側 요구의 긍정적 수용 등 勞使 兩側을 지도했고 1月27日 本部特別指導班을 현지에 파견해서 우선 勞組의 기능이 조속히 正常化되어야 한다고 서태수側과 李元健側의 접촉과 설득을 통해 2月22日 勞組兩側 대표 5名이 참석한 連席會議를 주재한 바 있으나 양측의 견해差로 合意點을 찾지 못하고 2月24日부터 3月2日까지 5次에 걸쳐 蔚山市長과 蔚山地方勞動事務所長이 勞勞間의 협상을 주선하여 勞使交涉單一팀」 구성과 서태수組合長의 퇴진보장 등에 대한 잠정 合意에 도달시켰으나 李元健側의 번복으로 무산이 되었고 3月18日 本部特別指導班을 현지에 파견해서 臨時總會 소집을 통해 勞組가 조속히 正常化하도록 지도중에 있읍니다.

○韓光玉委員 이 문제는 지금 서태수側과 李元健씨側의 兩勞組間의 싸움처럼 비치고 있는데 사실 뒤 會社側의 교묘한 어떤 작전이라고 할가 그런 것에 의해서 勞勞싸움처럼 보입니다마는 基本的으로 그동안에 會社側에서 勞使問題에 대해서 전혀 對話와 說得보다는 物理的인 힘으로써 탄압하려고 했던 것이 하나의 噴出된 결과라고 본인은 판단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견해를 내가 長官께 묻겠읍니다.

지금 내가 會社側에도 만나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會社側의 얘기가 臨時總會를 열어 가지고 臨時總會에서 결론이 나면은 거기에 따르겠다는 뜻의 意見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臨時總會를 열기 위해서 이원건씨측에서 組合員 1萬8,693名중에 68%인 1萬2,634名의 署名을 받아가지고 臨時

總會 召集權者를 指名해 달라고 蔚山市廳에 要求를 했읍니다.

왜냐하면 서태수씨측에 總會召集을 要求하니까 그쪽에서 條件을 先 罷業終結後 總會開催 그 다음에 勞動組合이 두 個가 있으니까 現 이원건씨측의 事務室을 撤收하라 이 두가지 條件을 내걸고 總會를 召集해 주지 않기 때문에 직접 蔚山市廳에 냈는데 本委員 견해로는 당연히 蔚山市廳에서 勞動委員會와의 承認을 받아 가지고 臨時總會召集權者를 指名해서 臨時總會를 召集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長官의 견해는 어떤지 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勞動部長官 張永喆 저희들도 사실은 現執行部와 反 執行部間의 문제가 너무 오래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勞勞間의 문제와 勞使間의 문제가 겹쳐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지금 韓委員께서 지적하신대로 이원건씨측에서 臨時總會에 대한 召集을 1萬2,634名의 그것을 얻어 가지고 현재 蔚山市廳에 總會召集에 대한 것을 냈읍니다마는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補完書類를 내라고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읍니다.

○韓光玉委員 補完書類는 어떤 補完書類말입니까?

○勞動部長官 張永喆 補完書類에 대해서는 서태수 現 執行部側이 자기들도 臨時總會를 懈怠나 기피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와 또 하나는 1萬2,634名이 署名을 했는데 署名要求者가 正常的인 상황에서 署名을 했는지에 대한 확인 때문에 蔚山市廳에 서태수側 執行部에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補完書類를 해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韓光玉委員 그러한 이유만 가지고는 說得力이 없다고 보고 어쨌든간에 本委員 판단으로는 法에 의해서 68% 3분의1 이상이면 당연히 열어 주게 되어 있는 것을 召集權者를 指名해서 열어 주게 되어 있는 것을 열어 주고 있지 않는 蔚山市廳과 勞動委員會 처사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하루 빨리 召集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長官 張永喆 예. 알겠읍니다.

○韓光玉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 現代側에서 警察力을 勞使紛糾에 投入을 시켜달라 이렇게 要請한 것을 新聞의 報道를 통해서 본인이 봤읍니다.

이것에 대해서 勞動部에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우선 그 眞相을 묻고자 합니다.

○勞動部長官 張永喆 아직까지 勞動部로서는 그런 요구를 물론 警察力에 대한 投入에 대해서는 勞動部에 요구할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勞動部로서는 그 내용을 아직 모르고 있읍니다.

○韓光玉委員 파악을 못하고 있읍니까?

○勞動部長官 張永喆 못하고 있읍니다.

○韓光玉委員 新聞紙上을 보면…

○勞動部長官 張永喆 그것이 왜냐하면 現代側에서 현재 正常操業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反 執行部에서 와 가지고 操業을 방해한다든가 또 서로 쌍방간에 여러 가지 不祥事가 생기고 신문에 난대로 負傷者도 생기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法 秩序를 지키기 위한 그런 면도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알기로는 현재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告發措置한 사항으로만 알고 있읍니다.

○韓光玉委員 어쨌든간에 勞使間題를 대화를 기피하고 자기의 一方的인 주장만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것이 안되면 公權力을 동원해서 힘으로써 鎭壓한다든가 또 鎭壓을 통해서 彈壓局面에 접어든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現代紛糾를 해결하는데 대해서 조금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勞動部側에서는 판단을 하셔 가지고 이러한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을 會社에 警告할 용의가 없는 것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勞動部長官 張永喆 그것은 行政府間에 또 서로 協調體制에 대한 구축입니다마는 이것이 長期化되고 不法的인 모든 문제가 다루어지고 할 때는 社會 安定的인 측면에서 보는 시각도 關係當局에서는 그런 시각도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만 勞動部로서는 이러한 것이 法 秩序테두리내에서 勞勞間의 문제든 勞使間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하루속히 定着되도록 지도해 나가는 것을 勞動部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겠읍니다.

○韓光玉委員 좋습니다. 하여간 長官으로서 좀더 분발해 가지고 무엇인가 내가 長官으로 있으면서 이 勞使問題 이러이러한 업적을 남겼다 업적을 꼭 남긴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長官으로서 노력하는 자세와 하나의 實績을 보여 주기를 당부를 드리고 現代問題에 대해서는 좀 積極的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臨時代議員總會를 열게 해서 왜 그것을 召集을 안시켜 주느냐 열어 가지고 勞組員들의 뜻에 따른 代表를 뽑고 그 代表를 통해서 勞使間에 團體協約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수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勞動部長官 張永詰 예. 감사합니다.

○韓光玉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令培 다음은 統一民主黨所屬 盧武鉉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盧武鉉委員 이것 한 번 물어 봅시다.

勞動部 公務員이 지난 번 國政監査때 우리 勞動委員會에서 서울市에 나가서 國政監査한 내용을 그때 누가 참여하셨읍니까? 國政監査 期間 동안에 쭉 함께 勞動部가 수행하고 참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다음 것 묻겠읍니다. 모르는 것 자꾸 물어 볼 수도 없고…

○勞動部長官 張永詰 모르는 것이 아니고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盧武鉉委員 그런데 그때 참여는 안하셨다 하더라도 어떤 얘기가 論議됐는지 그 뒤에 혹시 누가 챙겨 보기는 했읍니까? 勞動行政에 있어서 중요한 일 아니겠읍니까?

비록 勞動部 傘下機關이 아니라 할지라도 業務上 서로 협조하고…

○勞動部長官 張永詰 다 정리가 됐읍니다.

○盧武鉉委員 그 당시에 쭉 거론된 바에 의하면 이게 87年12月 협약에서 부터 비롯되는 것이지요? 地下鐵紛糾 말입니다.

○勞動部長官 張永詰 예.

○盧武鉉委員 그래 가지고 加算 3 號俸하고 괄호 열고 3萬3,000원이라는 文句는 언제 나왔읍니까?

○勞動部長官 張永詰 盧委員님! 좀 이해하시면 이것은 옛날부터 올라가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答辯을 드리기 어려우니까 그 내용을 아는 擔當局長한테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盧武鉉委員 예. 그렇게 하시지요. 加算 3 號俸 그리고 괄호 열고 3萬3,000원이라는 字句가 언제 작성되었읍니까? 88年6月18日 아닙니까? 加算 3 號俸 괄호 열고 3萬3,000원이라는 文句가 나온 것이 언제입니까?

○勞動部勞使指導官 金相男 88年6月17日로 알고 있읍니다.

○盧武鉉委員 제가 하루 틀렸네요. 난 아무 기록도 없이 기억하고 있단 말이예요. 勞動部公務員은 기억 못하고…

그런데 그것은 87年12月 合意覺書의 이행을 위한 諒解覺書이지요?

○勞動部勞使指導官 金相男 그렇습니다.

○盧武鉉委員 그러면 그 문제에 관해서 文章의 해석이나 異見이 있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그 文句 아닙니까? 그렇지요?

○勞動部勞使指導官 金相男 그렇습니다.

○盧武鉉委員 그런데 만들어 놓고 나서 그 文句의 해석에 관해서 또 다시 서로 분쟁이 있었지요?

○勞動部勞使指導官 金相男 예.

○盧武鉉委員 분쟁이 있어 가지고 辯護士 意見書까지 다섯 사람인가 갖다 붙이고 했었지요?

○勞動部勞使指導官 金相男 예.

○盧武鉉委員 그런데 辯護士 意見書까지 갖다 붙이고 했던 그와 같은 행위가 當事者間에는 명백하게 合意된 사항을 뒤집기 위해서 했던 欺瞞的 行爲라는 사실을 그 당시 國政監査때 地下鐵公社社長이 인정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勞動部勞使指導官 金相男 거기까지는 들은 바가 없읍니다.

○盧武鉉委員 速記錄 꺼내서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바로 협상을 한 當事者는 무엇때문에 그 條項을 만들었고 무엇때문에 그 條項이 나왔으며 무엇때문에 또 諒解覺書에 加算 3 號俸이 나왔고 괄호안에 3萬3,000원이 들어 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合意의 과정을 전혀 숨겨 놓고 글자만 그 文句만 딱 들고 가 가지고 辯護士한테 가 가지고 해석을 바란다 하니까 해석이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저렇게도 나올 수 있는 것아닙니까?

어떤 文句의 해석이라는 것은 그 文句가 작성된 배경을 전제로 해서 만이 合理的인 해석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정하에서 무엇이 論議되다가 이 文句가 나왔다 하는 것이 알려져야 비로소 合理的인 해석이 가능하다 바로 이렇게 물었읍니다. 물었고 그 당시의 배경에 관해서 지금 다시 거론치는 않겠읍니다마는 몇 가지의 사실들을 指摘하자 地下鐵公社社長이 대단히 잘못 되었다고 사과하고 즉시 고치겠다고 얘기했읍니다.

이미 그 당시에는 그 3萬3,000원을 오히려 勞動者들이 양보하는 새로운 合意가 맺어졌던 때입니다. 또 한번 勞動者들이 罷業을 하는 것은 市民들에게 이미 약속된 既得權을 일보 양보하면서 새로운 合意가 맺어졌던 때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地下鐵公社의 처사가 매우 잘못됐음을 指摘하고 인정되었읍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勞動部의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요. 그 당시에 地下鐵公社社長이 그 점을 承認했는가 안했는가 勞動部에서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까? 地下鐵紛糾가 오늘과 같이 그야말로 政府에서 말하는 대로 市民의 발이 묶이는 이 엄청난 事態앞에 勞動部가 그와 같은 과거의 紛糾의 연원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를 제가 한번 물어 본 것입니다. 알고 있읍니까 모르고 있읍니까? 적당히 나와서 얼렁뚱땅하고 몇 마디 듣고 잘하겠읍니다 하고 끝나면 이게 國會이고 質疑이고 答辯입니까?

答辯하십시오. 왜 地下鐵紛糾가 오늘에 이르렀는가 하는 事態에 관해서 그 원인에 관해서 勞動部가 무엇을 알고 있읍니까?

이 質疑가 필요한 것입니까 안 필요한 것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團體協約의 不履行은 處罰받을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요?

○勞動部長官 張永詰 勞動部로서 서울地下鐵 勞使紛糾에 있어서 勞使間에 서울地下鐵 勞組와 서울地下鐵公社와의 문제라고 그러더라도 이러한 公益事業으로서 큰 문제가 要素가 되었던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쭉 정리가 저는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盧武鉉委員 지금까지 87年 年末에 맺어졌던 勞使合意가 88年 年末이 지나가도록 履行됐읍니까 안됐읍니까?

이번 罷業이 根本的으로는 合意覺書 履行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1年間이나 이래서 몇 번의 罷業의 고비를 넘겨 가면서… 合意覺書는 團體協約 아닙니까?

○勞動部勞使指導官 金相男 그렇습니다.

○盧武鉉委員 그 合意를 어긴 地下鐵公社社長에 대해서 勞動部가 立件했읍니까 調査했읍니까 무엇을 했읍니까? 그 實績을 내놔 보십시요. 處罰받을 행위가 되는지 안되는지 檢討해 보셨읍니까 안해보셨읍니까?

勞動者만 내리 잡아 넣으면 그만입니까? 社長이 勞動法 違反事態가 處罰받을 행위에 立件될 행위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答辯해 주십시요.

○勞動部勞使指導官 金相男 團體協約 不履行에 관한 處罰은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 서울地下鐵公社와 勞組間에 合意된 10個 合意覺書 내용중에는 즉시 履行이 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물론 있었읍니다마는 勤務制度의 변경이라든지 報酬制度의 改善은 바로 地下鐵公社 一方的으로 施行하기에는 勤勞條件의 내용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限은 勞使 當事者간에 協議가 반드시 전제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盧武鉉委員 다시 이렇게 묻지요.

○勞動部長官 張永詰 盧委員님! 여기 보니까요 89年2月28日 組合長 정윤광이 團體協約 不履行 등의 혐의로 公社代表 金命年을 서울東部勞動事務所에서 告訴를 한 일은 있읍니다.

○盧武鉉委員 그러니까 地下鐵이 터지고 勤勞者들이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告發 받아 가지고 調査하면 무엇합니까?

혹시 이와 같은 事例때문에 한번 더 묻겠읍니다.

現代問題도 마찬가지인데요. 總會召集權者 指名申請이 있을 때 어떤 때 내주고 어떤 때 안 내줍니까?

○勞動部勞使指導官 金相男 一般的으로는 組合員들이 臨時總會 召集을 要求하고 執行部가 기피하거나 懈怠하였을 경우에는 行政官

廳에 召集權者를 指名을 해서 要請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行政官廳에서 地方勞動委員會의 承認을 얻어서 내주는 사항입니다.

○**盧武鉉委員** 그래서 어떤 경우에 承認이 되고 어떤 경우에 承認이 안됩니까?

○**勞動部勞使指導官 金相男** 一般的으로는 다 承認이 돼서 召集權者가 指名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盧武鉉委員** 勞政局長 한번 나와 보세요. 지난 번 大宇自動車 總會召集權者 指名申請 나왔었지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예. 그렇습니다.

○**盧武鉉委員** 棄却했읍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그렇습니다.

○**盧武鉉委員**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서 法理論爭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申請이 들어 왔을때 本委員이 어떤 問題點이 있느냐고 質問했지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예. 그렇습니다.

○**盧武鉉委員** 물론 國會에서의 公式的인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質問했지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그렇습니다.

○**盧武鉉委員** 그때 뭐라고 答辯하셨읍니까? 問題가 있다고 했읍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신중하게 檢討하겠다고 答辯했읍니다.

○**盧武鉉委員** 신중히 檢討하겠다고 했지요? 별 문제가 없음을 指摘하자 별다른 問題點을 별로 말씀을 못하셨지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그것은 제가 그때 檢討하고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신중히 檢討해 보겠다고 했읍니다.

○**盧武鉉委員** 그 뒤에 棄却했지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그 뒤에 棄却이 됐읍니다.

○**盧武鉉委員** 물론 私的인 자리에서 私的인 方式으로 非公式的 方式으로 전화를 드렸고 質問을 했읍니다마는 그래도 명색이 國會議員이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물으면 棄却할 때 檢討해 보니 이러 이러한 事由가 있어서 棄却을 했다 또는 할 수 밖에 없다 한마디 通報라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法律上 義務는 없읍니다 어떻습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通報를 못해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盧武鉉委員** 내가 하는 얘기는 오늘의 質問이 필요 있는가 없는가를 오늘 이와 같은 質疑의 자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國會議員을 뉘집 강아지 짖는 소리… 신신당부하고 문제가 있으면 한번 더 협의합시다. 審議過程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한번 협의해 주십시오까지 얘기했는데 뉘집 강아지 짖느냐 하는 소리로 깔아뭉개 버리는 非公式的인 要請이지만 그것을 그렇게 깔아뭉개는 局長이 여기 質問하면 달라 질 것이 있을 것 같아요? 公式的이면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勞動部長官 張永喆** 盧武鉉委員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勞動部 幹部들이나 勞動委員會 委員님이나 모든 분들이 사실은 勞使平和를 기하도록 하자는 뜻에서 충정은 알겠읍니다마는 앞으로 저희 幹部들이 公式的이든 그냥 바쁠 때 전화를 주시든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이 國會에서 質疑하신 때와 마찬가지 입장에서 항상 저희들이 신중하게 檢討를 하고 또 答辯을 올리도록 제가 指導監督을 하겠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盧武鉉委員** 다음 하나 더 묻겠읍니다.

지난 3月10日 勤勞者의 날에 勞動界 사람들에게 産業褒章이 주어진 일이 있읍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그렇습니다.

○**盧武鉉委員** 혹시 釜山航運勞組委員長 吳文煥씨도 産業勳章을 받은 바 있읍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그렇습니다.

○**盧武鉉委員** 어떤 功績으로 産業褒章을 받았나요? 産業褒章이 大統領表彰보다 더 무게가 있는 것이지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大統領表彰보다 한 級 위입니다.

○**盧武鉉委員** 그렇죠. 무슨 功績으로…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功績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每年 3月10日 勤勞者의 날에는 勤勞者側을 선발해서 褒賞을 해 주고 있읍니다. 이번 3月10日 褒賞은 지난 88年9月 중순에 立案이 됐고

88年10月 초순에 全國 市·道와 地方事務所에 適格者를 선발하도록 추천을 받았읍니다. 吳文煥釜山航運勞組委員長은 釜山市長이 추천을 해 가지고 89年2月5日 總務處에 褒賞上申을 해 가지고 2月末頃에 褒賞이 확정된 상태였읍니다.

○盧武鉉委員 그것이 진행될 때 勞動部에서 전혀 모르고 있었읍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問題提起가 된 것이 褒賞確定이 된 이후였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褒賞이 되고 나서도 취소할만한 事由가 발견될 때에는 취소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확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확정된 取消事由가 발견되기 전에는 다시 고칠 수가 없었읍니다.

○盧武鉉委員 얼마나 우스운 꼴이 돼버린 것인지… 監査報告書 내용에는 本 常委에서 제기됐던 문제는 다 빠지고 다른 것만 監査報告가 됐는데 문제가 제기된 본질의 문제 그 부분은 다 빠져 있지만 그래도 이미 그 점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80年에 十數차례의 組合加入을 둘러싸고 金品을 받은 罪로 確定判決까지 받고 있고 그 이후 지금 檢察에 의해서 起訴돼 있고 또 數十件의 金品授受에 관한 資料를 本委員이 넘겨 주겠다 調査過程에 넘겨 주려고 하니까 안 받으려고 해서 못넘겨 준 것인데 實務陳에서 안 받으면 長官한테라도 넘겨 주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마당에 産業褒章이나 나가고 어떻든간에 問題提起는 本委員이 했지만 勞動部에서의 調査는 이 常委의 決議에 의해서 調査를 촉구한 것이고 그것을 받아서 調査한 것 아닙니까? 그 結果가 産業褒章으로 나타나는 이런 상황에서 常委하면 뭐합니까?

○勞動部長官 張永喆 盧委員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도 오늘 그 말씀을 들었읍니다마는 勞動組合에 加入된 勞動組合員들이 170萬名 정도 되고 全體的으로 1,000萬名의 勤勞者에 대한 3月10日 勤勞者의 날 行事에 대해서 褒賞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큰 行事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勞總이라든가 産別이라든가 市·道에서 추천하는 것을 가지고 그냥 우리 勞政局에서 이떤 경우에 보면 政府機關에 추천을 하면 그냥 그대로 그 功績에 대한 것만 하고 다른 分野에 대해서는 사실은 調査를 功績審査에 대해서 신중히 기하지 못했다 하는 것도 제가 생각을 하겠읍니다. 앞으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褒賞問題는 國家에서 주는 훈격이니까 더욱 더 엄정히 審査를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盧武鉉委員 이 얼마나 웃겠읍니까? 더욱이 國會가 무슨 꼴입니까? 地下鐵도 좋고 現代도 좋고 現代도 빨리 警察投入해 가지고 끌어내고 잡아넣고 하십시오. 國會도 밤낮 떠들어 봤자 과거에는 이런 얘기가 國會議員으로서의 品位에 관계되는 문제인지 모르지만 딱 잘라 얘기하겠읍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기서 얘기했던 소리는 개짖는 소리에 지나지 않았다 나는 그렇게 분명하게 斷言하고 이 나라의 勞動者는 어떤 法節次에 의해서도 保護받을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없다… 立件 送致 백번하면 뭐합니까? 매일 짓밟는데 그들은 감옥에 안가는데요. 法的으로 勞動者들을 保護해 주지 않는 이상 勞動者들도 法에 기대서 자기들의 權利를 保障받을 수는 없읍니다. 앞으로 이 자리에서 長官 상대로 이상 더 개짖는 소리는 하지 않겠읍니다. 다만 아무리 잡아넣고 아무리 國會를 깔아 뭉개도 勞動者들이 그렇게 그만 두지는 않습니다. 잡아 넣어 보십시오. 앞으로 이 社會가 勞動者들 세력에 의해서 不安이 생긴다고 가정할 때 그 不安에 대해서는 責任을 지십시오. 떡하니 앉아 가지고 月給만 타먹고 그렇게 앉아 가지고 복에 힘만 주고 다니면서 큰 소리만 친다고 公務員이 아닙니다.

○委員長 金令培 다음은 新民主共和黨所屬 金炳龍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炳龍委員 事件內容에 대해서는 별로 質問 안하고 政策的으로 앞으로의 解決策에 대해서 勞動部側에 質問하겠읍니다.

먼저 4個事項이 合意되지 않은 사항이 89年1月1日부터 實行에 옮기도록 이렇게 合意가 되어 있지요. 諸手當支給問題가요? 1月1日附로 施行하도록 合意가 되지 않았읍니까? 그렇죠?

○勞動部長官 張永喆 예. 그렇습니다.

○金炳龍委員 제가 政策的인 質問을 하고 싶은 것은 地下鐵 勞使紛爭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약 3個月 동안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 문제로 해가지고 勞使가 갈등이 있었고 또 交涉過程에서 서로가 양보 못하겠다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이 있었는데 勞動部의 역할이 과연 어느 정도였는지 지금 앞에 있는 委員 몇분이 다 質疑를 했읍니다마는 저 자신도 아직 잘 이해가 가지를 않고 있읍니다. 적어도 勞動部로서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20年前만 하더라도 保社部傘下의 勞政局 정도가 있었고 그후에 70年度 初에 勞動廳으로 昇格을 하였고 81年度에 다시 좀더 勞動部를 강화시켜야 되겠다 라고 해서 勞動部로 昇格이 됐읍니다. 그런데 勞動部의 역할이 가만히 보니까 과거에 保社部傘下의 勞政局으로 있을 때만큼의 역할로 보이지 않는다고 本委員으로서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더욱이 勞動廳 당시에도 勞使問題에 대해서 勞動廳이 廳長이 아무리 큰 勞使紛爭이 일어나도 이를 직접 主管하면서 해결하는 것을 과거에 저는 많이 보았읍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勞動部가 과연 그런 크게 일어나는 勞使紛爭問題를 直接主管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앞에서 그냥 그대로 現況把握만 하고 있는 것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읍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廳에서 部로서의 昇格을 시키면서 1,000萬 勞動者가 이 나라에 存在를 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를 政府次元에서 강력하게 事前에 豫防을 하고 또 勞使間에 紛爭이 일어났을 때에는 勞動部가 이를 專擔해서 事前에 合意를 시키고 調整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部로 昇格이 된 것으로 아는데 근래에 와서는 勞動部가 너무나 미약하다 하는 이런 인상을 우리 勞動委員 뿐만 아니라 勞動問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쉽게 말씀드리서 서울地下鐵 勞使紛爭만 해도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勞使合意事項이고 또 많은 사람들의 證人이 있고 또 이를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公社社長이 굳게 약속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다 했을 때에는 당연히 勞動部로서는 직접 이를 仲裁할 權利도 있고 또 실천에 옮겨지지 않았을 때에는 當公社에 책임추궁도 할 수 있는 行政府의 어떤 權限이 없다 라고 하면 勞動部가 사실은 뒷전에 앉아서 現況把握이나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많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또 여기에는 아마 長官이하 勞動部의 重要局長 모두 參席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勞動部로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勞動部가 과연 이러한 정도의 기능과 역할밖에는 할 수 없다고 하면 이제는 勞動委員會가 勞動部를 상대로 해서 이러한 質問을 해 보았댔자 큰 效果가 없을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勞動部長官이하 모두가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地下鐵問題도 그렇습니다. 事前에 豫防을 하고 事前에 調整을 해서 그러한 사실들이 모두가 다 勞使가 平和스럽게 産業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勞動部를 필요로 하는 것이고 또 勞動部가 그런 調整役割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겠다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 本委員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서울地下鐵 勞使紛爭은 그렇습니다. 本委員이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는 事件이 너무나 커졌읍니다. 數十名이 연행이 되고 또 수배중에 있고 集團이라고 하는 것은 行動을 하다보면 法을 違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本委員이 아까 말씀드리기를 政策의 차원에서 質問하겠다고 그랬읍니다. 이와 같은 때에는 政府가 政策的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拘束돼 있는 組合員이나 또는 수배중에 있는 組合員들에 대한 政府로서의 어떤 관용 또는 政策的으로 이를 合意하기 위해서 아량을 베푼다는 이러한 투철한 勞動部의 政策이 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이러한 政策이 선행되지 않는 가운데에서는 아마 서울地下鐵 勞使問題는 해결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本委員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長官으로서 서울地下鐵 勞使問題를 政策的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되겠다

라는 소신과 결심이 서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勞動部長官 張永喆** 金炳龍委員께서는 勞動部가 그 동안에 해온 일에 대해서라든가 勞動部가 하여야 할 일에 대한 것을 아주 여러가지로 지적을 해 주시고 말씀을 했읍니다.

이 勞動部란 잘 아시겠지만 우리 勤勞者들의 權益을 保護하고 또 勞動者들의 福祉增進을 위해서 또 勞使間의 産業平和를 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읍니다마는 지금 勞動問題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當事者問題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가지 産業이 高度化되고 意識構造의 변화라든가 이런 입장에서 實質的으로 어려운 경우를 느낄 때도 勞動部當局으로서 많습니다마는 좀더 勞動部에서는 이 産業平和와 勤勞者의 權益保護를 위해서 좀더 積極的인 行政을 하겠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 동안에 여러가지 보시는 視覺에 따라 勞動行政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地下鐵問題만 하더라도 金委員님께서 가지시는 심정이나 저나 하루빨리 正常化돼서 市民生活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政府에 있는 입장이나 委員님이나 모든 市民이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저도 이 問題解決에는 가능하다면 하루속히 正常化되도록 저 자신도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러나 지금 告發된 상태에서 法의 執行問題는 지금 제가 그것을 公文으로라든가 指示해서 그런 罰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읍니다마는 實質的으로 市民의 발인 地下鐵이 正常化되면 關係當局과 協議를 하도록 하면서 金委員님의 뜻을 충분히 알겠읍니다.

(金令培委員長, 盧武鉉幹事와 司會交代)

○**金炳龍委員** 本委員이 長官한테 그런 答辯을 들으려고 제가 質問한 것은 아닙니다. 一部處의 長官이라고 하면 어떤 實務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나라의 政策을 다루는 國務委員이라고 本委員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實務的인 것을 제가 質問 안하고 政策的인 次元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意志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質問했읍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물론 法에 저촉이 되겠지요. 허나 問題를 해결하고 또 産業의 平和를 위해서는 하나의 集團이 어떤 行動이 法에 저촉됐다고 해서 이를 꼭 法에다 미룰 것이 아니라 長官께서는 國務委員으로서의 關係長官들과 政策的으로 이 문제를 하루 속히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意志가 決心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決心도 적당히 가서 協議해가지고 안된다 이래가지고는 안되겠지요. 勞動部로서는 당연히 하루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서울 1千萬 市民들이 편안하게 좀 살 수 있게 하루속히 해결해야 되겠다 政策的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읍니다.

어떤 原則的인 문제를 적당히 協議를 해 보겠다라는 생각이라면 質問할 필요가 없지요.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長官께서는 이 문제는 政治的인 次元 또는 政策的인 次元에서 빠른 時日內에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所信과 決心을 다시한번 천명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읍니다.

○**勞動部長官 張永喆** 알겠읍니다.

○**金炳龍委員** 알겠읍니다가 아니고 확실한 答辯을 해 주셔야지요.

○**勞動部長官 張永喆** 그 문제에 대해서는 金委員님과 생각하시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法에 대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은 政策的인 次元하고 法執行의 次元하고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명확히 못 드렸다마는 金委員님의 뜻을 제가 충분히 알겠읍니다.

○**金炳龍委員**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法에 계류되어 있고 法에 의해서 處罰을 받아야 된다고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政府가 관용을 베풀 수 있다 이것입니다. 관용이라는 것은 大統領이 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政策的인 次元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지 實務的인 것을 얘기하려면 얘기가 안되는 것이지요. 法은 法대로 執行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政策的인 次元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長官께서 所信과 決心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現代重工業에 대해서 몇가지만 質問을 하겠읍니다.

2月21日 現地에서 勞使間에 충돌이 있었지요 報告書에 나와 있읍니까?

○勞動部長官 張永詰 2月11日 操業을 중지해가지고 2月23日까지의 紛糾內容은 들어가 있읍니다.

2月21日에 대해서는 제가 챙겨보겠읍니다.

○金炳龍委員 2月21日에 그날 會社側의 救社隊에 의해서 많은 組合員들이 重傷 또는 負傷을 당한 사실을 勞動部로서 報告받은 사실이 있는지?

○勞動部長官 張永詰 그런 사항에 대해서 蔚山勞動事務所에 報告가 된다고 알고 있읍니다.

○金炳龍委員 勞動部에 報告됐느냐 이것입니다.

○勞動部長官 張永詰 당연히 報告가 됐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金炳龍委員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는지?

○勞動部長官 張永詰 왜냐하면 그런 日字別로 죽 나오니가 이것을 간략하게 委員님께 報告를 드리다 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챙겨보겠읍니다.

○金炳龍委員 本委員이 質問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2月21日 救社隊에 의해서 組合員間에 충돌이 있으면서 救社隊側에서 많은 組合員을 구타하고 負傷을 낭했다는 사실을 勞動部로서는 알고 있는지 그것을 質問하는 것입니다.

○勞動部長官 張永詰 그 날짜가 2月21日에 대해 물으셨읍니다마는 2月18日과 2月20日에 罷業勤勞者側은 社內集會時 示威 連坐籠城 및 作業現場巡回등에 의한 罷業同參宣言등으로 作業妨害를 계속하고 있었으며 2月18日과 2月21日에는 出勤時間에 正門 5個所를 점거차단 出勤者로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21日件은 제가 찾아 가지고 報告를 드리겠읍니다.

○金炳龍委員 거기서 救社隊가 각목과 쇠파이프를 들고 本委員이 報告 받은대로 그대로 말씀드리면 심지어 칼로 찔러가지고 重傷을 입은 組合員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 寫眞까지 다 봤읍니다.

○勞動部長官 張永詰 2月20日께 57名이 正門遮斷 管理職과 罷業勤勞者 충돌해서 57名이 다친 것은 있읍니다.

○金炳龍委員 그런데 그러한 事件에 대해 勞動部로서의 어느정도 정밀하게 調査를 했으며 또 現代重工業의 勞使紛爭에 대해서 常任委員會가 열릴 때마다 추궁도 하고 직접 調査를 해서 하루속히 이 문제를 매듭짓도록 이렇게 總力을 집중해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있었읍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勞動部로서의 現代重工業의 그와 같은 紛爭을 해결하는데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 하는 것이 아주 궁금합니다.

또 現代重工業問題는 蔚山地域뿐만 아니라 全國的으로 큰 事件으로서 지금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政府로서의 積極的인 어떠한 解決策 또는 調整役割 또는 勞動部 次元에서 어려우면 國務總理傘下에 어떠한 特別收拾對策委員會를 구성해서 直接的으로 이를 수습하는데 總力을 좀 집중해야되겠다라는 뭔가 政府로서의 意志가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오늘 이 시간까지도 그와 같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勞使問題는 當事者間이니까 너희끼리 언제가 됐든지간에 치고 받고 싫컷 싸워봐라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勞動部로서의 정말 다시한번 생각하면서 國務總理 傘下에 特別收拾對策委員會를 구성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勞動部長官이 직접 진두지휘를 해서 그 문제를 수습하는데 어떠한 특별한 對策과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거기에 대한 對策에 대해서 좀 구상을 하고 있으면 長官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勞動部長官 張永詰 金委員님께서 現代重工業 勞使紛糾에 대해서 여러가지 걱정을 하시는 입장에서 또 實質的인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자신도 이 現代重工業이 우리나라의 基幹産業 중의 하나이고 또 이 문제로 인해가지고 部品業體의 倒産등 여러가지

이려운 문제도 물론이겠지만 특별히 이 勤勞者들이 자기의 일터를 찾아서 일을 못하는 것이 長期化 될 때 대단히 마음이 아프다고 생각을 하고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常任委員會 때도 金委員님께서 그런데 대한 좋은 의견의 말씀도 계셨읍니다마는 當部로서도 實質的으로 이것이 勞使間의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根本的으로는 勞勞間의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政府의 어떤 機構에서 조정은 하지만 어떤 경우에 보면 또 어려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勞勞間의 문제도 아까 韓光玉委員님께서 質疑하셨읍니다마는 臨時代議員總會를 열어서 蔚山市에 지금 신청을 해놓고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이 문제의 해결에 대해서 本部 局長을 班長으로 해서 여러번 가서 했고 특별히 이원건側과 서태수側을 처음으로 다섯사람의 代表로 한자리에 앉혀서 이야기 할 수 있는 조정 역할도 勞動部 本部에서 간 班에서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아무쪼록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분야를 계속 주시 하면서 하루속히 正常化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金炳龍委員 끝으로 한가지 더 묻겠읍니다.

모토로라 勞使問題에 대해서 企業主側에서 不當勞動行爲한 사실에 대해서 勞動部에서 告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것은 잘 된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마는 실제 告發形式만 취한 것이지 告發內容과 그 結果가 아직 뚜렷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 結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勞動部長官 張永詰 主務局長으로 하여금 答辯드리도록 하겠읍니다.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報告드리겠읍니다.

紛糾와 관련된 不當勞動行爲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本部하고 해당 地方事務所인 東部地方事務所에서 다시 조사를 해서 勞組側에서 주장한 총 열두個 事例에 대해서 조사를 한 바가 있읍니다. 이 중에서 解雇 및 停職問題는 분명하게 不當勞動行爲가 된다 이렇게 판정을 해서 3月18日字로 檢察에 送致 했고 이것은 檢察이 事件을 處理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金炳龍委員 그리고 폭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읍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폭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결과를 전부 검토한 결과 바로 不當勞動行爲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여러가지 事由가 있어서 그것은 檢察送致에는 제외 했읍니다.

○金炳龍委員 알았읍니다.

그리고 신애전자 勞使問題도 企業主側에서 不當勞動行爲한 사실에 대해서 勞動部로서 그때 告發을 해서 조치하겠다고 말씀을 했읍니다. 告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신애전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企業主가 拘束이 되어야 되는데 不拘束으로 지금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勞動部로서 신애전자에 대해서는 業主를 拘束시키도록 적극 협조해 줄 용의는 없는지 長官께서 좀 答辯해 주세요.

○勞動部長官 張永詰 지난 年末에도 신애전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告發을 했읍니다. 지금 현재 金委員님 말씀대로 신애전자에 대해서도 勞使間에 어느정도 협의가 되어가지고 4月까지 全體的으로 65名에 대한 勤勞者를 순차적으로 희망하는 勤勞者는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해서 이야기가 된 줄 알고 있읍니다. 제가 年初에 報告할 때도 했읍니다마는 우리가 11月23日도 拘束 품신을 해서 不拘束으로 되었고 일단 勤勞者들이 正常的으로 이달 末까지 취업이 되면 또 그것만 했다고 그래도 저희들은 不當勞動行爲라든가 여러가지 不法行爲에 대해서는 병과해서 行政處理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약속드리겠읍니다.

○金炳龍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盧武鉉 다음은 民正黨 李康熙委員님 質問해 주십시오.

○李康熙委員 民正黨의 李康熙委員입니다.

3月15日 最終的으로 서울地下鐵公社 勞組하고 서울市長하고 協議해서 서울市長의 合意文 調印을 要求 했는데 그것만 들어주었으면 이런 문제가 이렇게 극단적인데까지는 안오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서울市長께서 合意文에 調印을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읍니까?

○勞動部長官 張永喆 지금 서울市長하고 勞組委員長하고는 當事者間이 아닌데 싸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李康熙委員 물론 當事者다 아니다 하는 것을 따진다면 여러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地下鐵은 公企業이고 서울 千萬市民의 生活과 직접적인 밀접한 관련을 가진 交通問題인데 이것은 그런 어떤 原則의 次元을 넘어서라도 政策的인 아쉬움 속에서 이런 문제가 극단적으로 안나갈 수 있는 次元에서 서울市長이 이런데 응했더라면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國家 政策次元이 왜 이루어지지 못했느냐…

○勞動部長官 張永喆 그런데 어떤 團體協約에 合意署名을 하는 것은 어떤 原則대로 가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盧武鉉幹事, 金令培委員長과 司會交代)

○李康熙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勞組側의 서울市長이 해야 된다는 요구에 대해서 勞動部는 어떤 판단을 했읍니까? 勞動部로서는 그 판단에 의해서 어떤 처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읍니까? 그에 대한 勞動部의 판단과 어떤 절차를 가지고 만약 勞組에 이것은 무리이고 전연 法規에 상반되는 요구라면 그에 대해서 勞動部로서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겠읍니까?

○勞動部長官 張永喆 原則과 政策과 여러가지 與件과 또 事案에 따라 틀리겠읍니다마는 서로가 團體協約을 하는 것을 그것을 勞使 當事者에 하는 것을 政策的인 판단이다 뭐다 해가지고 서울市長이 한다 이런 것은 論理的으로 구성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李康熙委員 그러니까 서울市長이 할 條項이 아닌 것을 勞組側에서 適法하지도 않은 것을 주장해가지고 이런 서울市長의 署名을 요구하는 문제가 있다면 勞動部로서는 어떤 對處를 했느냐 이거지요.

○勞動部長官 張永喆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서울地方廳長이 勞使間의 조정을 위해서 충분히 勞動部 입장에 대한 이야기는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李康熙委員 그 깊은 내막은 長官으로서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勞動部長官 張永喆 예.

○李康熙委員 좋습니다. 3月16日 새벽 6時25分에 勤勞者들이 집단농성을 하고 있는데 일단 警察이 進入을 했는데 그때 警察이 몇 名이 거기에 進入을 했읍니까?

○勞動部長官 張永喆 그것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읍니다. 한번 알아가지고 報告를 드리겠읍니다.

○李康熙委員 잘 파악이 안되었다니까 나중에 확인을 하시든가 지금 확인을 해가지고 答辯을 좀 해주십시오. 여기 油印物에 이것 물론 勤勞者들이 일방적으로 한 油印物인지는 모르지만 저한테 입수된 油印物에 의하면 3月16日 새벽 6時25分에 警察이 1萬5,000名… 그 1萬5,000名중에는 首都防衛司令部등 軍人도 포함되어 있다는 說도 있다 하는 주장도 있읍니다. 그래서 분명한 政府側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勞動部長官 張永喆 지금 물론 治安本部에서 治安兵力이 동원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51個 中隊 7,600餘名이 그때 갔는 줄 알고 있읍니다마는 거기에 首都防衛司에 있는 軍人이 했다. 뭐 들어갔다 안갔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줄 알고 있읍니다.

○李康熙委員 있을 수도 없거니와 그런 일은 없었다 그런 명확한 答辯이십니까?

그 다음에 역시 이날에 警察이 進入하는 과정에서 勞動組合의 캐비넷이나 資料室 金庫 옷장등 일체를 뒤져가지고 金品과 資料를 절취해가는 과정이 있었다. 그래서 도난을 당했다 그런 것이 勤勞者側의 주장으로 이 油印物에 나왔읍니다. 그렇다면 소위 不信任하는 公權力에서 더하나의 不信問題가 붙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勞動部가 파악한 적 있읍니까?

○勞動部長官 張永喆 그런 사실을 報告받은 일도 없고 모르고 있읍니다.

○李康熙委員 전혀 파악이 안되어 있읍니까?

○勞動部長官 張永喆 예.

○李康熙委員 아까도 많은 委員님들이 勞動部에 대한 業務叱唾를 많이 했는데 勞動部가 이런 勞使現場에 어떤 문제가 생긴후라도 그에 대한 結果處理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더 眞意를 파악을 하고 또 거기에서

指導할 條項 또 依法處理할 條項 이런 것을 좀 分別해서 業務를 추진해야 할텐데 전혀 모르는 형태가 되니까…

○勞動部長官 張永喆 그런 것은 모른다하는 취지하고 報告 안받았다는 취지하고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보면 그것이 정당하게 政府에다가 이런 문제가 있어 억울하니 調査해주시오 하는 것하고 그냥 이렇게 종이로 해가지고 다니는 경우하고 거기에 대한 차이점은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또 勞動部로서도 지금 여러 委員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시는데 실질적으로 勞動行政을 하는 과정에 行政의 執行에 여러가지 원숙히 또 원활히 잘 못하는 경우도 있읍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모든 職員에 대해서 독려해서 懸案問題에 대한 좀더 적극적인 접근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읍니다.

○李康熙委員 이것도 다시한번 이런 油印物에 勤勞者側의 주장이 있으니까 확인을 분명히 하셔서 勞動部가 勞使問題에서 발생한 과정인만큼 가림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다음 次期國會에서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勞動部長官 張永喆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나중에 저희들이 한번 寫本으로 받아보도록 하겠읍니다.

○李康熙委員 예. 그 다음에 團體協約을 不履行했다는 것이 상당히 勤勞者側의 주장으로 인해서 그것이 종내 이런 파국현상까지 왔는데 이 團體協約을 不履行한 상당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勞動部는 판단하십니까?

○勞動部勞使指導官 金相男 10月5日字 合意覺書는 대단히 큰 내용의 合意覺書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특히 地下鐵公社側에서 약속한 勤勞時間의 調整이라든지 報酬制度의 改善은 勤勞者의 全 勤勞條件에 해당되는 것 만큼이나 큰 내용이라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公社側이 一方的으로 成案을 해서 施行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勞使가 제반 報酬制度나 勤務時間에 대한 協議가 前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勞使兩側의 사정으로 인해서 이것이 合意가 안되고 급기야 今年에 들어와서 履行을 놓고 문제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李康熙委員 그러니까 먼저 前任社長과 당시에 勞組側하고 合意한 것은 다 履行이 되었는데… 그런 뜻입니까?

○勞動部勞使指導官 金相男 그렇지는 않습니다. 10個 事項중에서 6個 事項은 履行되고 가장 바로 履行되기 어려운 事項이 4個 나왔었읍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第3項인 勤務形態의 改善 8時間 勤務라든지 定員調整이라든지 또 報酬制度의 改善은 基本給比率이라든지 또 이런 여러가지 報酬體系, 號俸調整등에 걸려 있기 때문에 대단히 방대한 작업이고 이것은 필히 勞使間에 協議가 되어야 할 事項이었다 이렇게 보는데 協議가 그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履行이 안된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읍니다.

○李康熙委員 그러니까 本委員이 質問드리는 것은 먼저 合意事項에 이러한 事項이 후의 의견차이였느냐 아니면 명백히 合意가 된 事項을 公社側에서 不履行한 것이냐 하는 것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勞動部勞使指導官 金相男 未履行 事項중에서도 1號 그리고 地下鐵勤務手當의 基本給化하는 문제 號俸隔差의 調整問題는 생각대로 勞使協議없이도 당장 施行할 수도 물론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3項에 모두 報酬制度改善勤務形態와 다 관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일괄적으로 서울地下鐵公社에서는 勞使合意를 前提로 해서 案을 마련하고 協議를 하려고 시도했다.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李康熙委員 그러니까 해석이 團體協約에 대한 不履行은 없다. 그런 것입니까? 履行을 왜 안했느냐 먼저 合意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履行을 안한 側이 어디냐 하는 것을 本委員이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勞動部勞使指導官 金相男 물론 履行을 89年1月부터는 이것을 施行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履行을 안한 것은 使用者側에 우선 責任이 돌려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使用者가 그 責任을 履行하는데 있어서는 勞使間에 勤務條件에 관해서 충분히 協議를 해야 할 事項들이 많

이 있었다 하는 것도 否認할 수가 없읍니다.

○李康熙委員 그러니까 그것은 不履行이 아니고 見解差問題로 해서 서로가 발생한 문제다 그렇게 지금 해석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團體協約을 履行 안했다는 것에 대한 많은 의혹을 가지셨으로써 不履行에서 이런 문제까지 왔다 하는 것에 대한 眞意를 파악하기 위해서 質問을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履行은 충분히 했다. 아니면 團體協約에 대한 해석에 대한 서로의 의견 차이였다. 그런 것이냐 아니면 전혀 公社側에서 不履行이 있었느냐 그것만 答辯해달라는 것입니다.

○勞動部勞使指導官 金相男 두가지 다 要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地下鐵公社側에서 그것을 履行을 하려고 해도 사전적으로 勤勞者側이 勞動組合과 協議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에서는 두가지 要素가 다 있다고 이렇게 보고있읍니다.

○李康熙委員 그러니까 源泉的인 不履行이라는 그것만도 아니다 그런 해석으로 勞動部가 판단했었다 이것이지요?

○勞動部勞使指導官 金相男 여하튼 地下鐵公社에서는 昨年 年末까지 이 문제를 해소했어야 되는데 해소하지 않은 책임은 있읍니다. 그러나 勞使間에 協議가 前提되어야 하는 事項이 協議가 되지 않아서 안된 것은 반드시 地下鐵公社의 전적인 책임이라고 하기는 곤란한 부분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李康熙委員 그러니까 지금 확실하게 答辯을 주십시오.

이 문제로 인해서 勞使間에 團體協約을 불이행함으로써 오늘의 사태가 왔다는 것이 많은 市民들의 어려움이고 또 서울市長이 그 合意書에 調印만 해 주었으면 이 문제는 피할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의혹이 많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로 인해서 오늘의 이런 문제가 생겼는 데 서울市長은 當事者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調印할 수 없었다 그런 해석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團體協約 合意文의 불이행에 대해서 勞動部가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미적지근하게 이것저것 다 섞여있다 그러면 勞動部의 판단이나 지도력은 전혀 없는 것이에요.

○勞動部勞使指導官 金相男 勞動部로서는 12月末까지 이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團體協約 불이행에 준해서 司法處理를 했던 것입니다.

○李康熙委員 그래서 公社 社長을 司法處理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후에 불이행으로 해서 公共交通手段問題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勞動部는 勞使間에 指導監督權이 다 있는데 어떤 문제로 인해서 불이행이 되면 그냥 告發로 끝나는 것입니까.

○勞動部勞使指導官 金相男 그렇지는 않습니다.

勞使間에 合意事項 4個項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었는 데 계속 협의해서 조속히 이행되도록 저희들이 계속 촉구하고 지도해 온 바가 있읍니다.

○李康熙委員 이 團體協約 履行與否가 가장 關鍵이라고 생각합니다. 勞組側 주장이나 公社側 주장이 그렇다면 勞動行政을 맡고 있는 데에서는 여기에 대한 판단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公社側의 불이행이다 아니면 勞組側의 견해 차이에서 나온 주장이다 그것을 판단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指導 내지 監督을 해야 예방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섞어놓고 두리뭉실하게 이것도 섞이고 저것도 섞였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그 판단을 못하는 勞動部라면 무슨 감독을 하고 지도를 하느냐 이것입니다.

다음 質問입니다.

서울地下鐵하고 釜山地下鐵하고 賃金에 차이가 있읍니까?

○勞動部勞使指導官 金相男 서울地下鐵公社하고 釜山地下鐵公社 하고는 100對 80정도의 수준으로 격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李康熙委員 釜山하고 서울하고 어떤 차등이 있읍니까 勞動強度에 차이가 있어서 給料도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勞動部長官 張永喆 그런 專門的이고 技術的인 문제는 나중에 答辯드리겠읍니다.

○李康熙委員 勞動部가 그런 것에 대해 지도를 해 나가려면 槪念定立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한번 더 勞動部가 정립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지금 勞使間의 여러 문제로 地下鐵問題가 罷業으로 까지 왔는데 앞으로 原

職 복귀를 안하면 처벌하겠다 解職시키겠다 이런 여러가지 說이 나오고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勞動部는 어떤 對策을 가지고 계십니까.

○勞動部長官 張永喆 勞動部로서는 하루속히 地下鐵이 正常化되어가지고 서울市民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도를 계속해 나가겠읍니다.

○李康熙委員 이번 서울地下鐵公社 勞使問題에 대해서 勞動部가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했다 그렇게 言論에 報道가 되었읍니다.

그것은 端的으로 勞動部의 능력 부족이냐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었던 것이냐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읍니까.

적어도 이것이 勞使問題로 규정이 되는데 勞動部가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했다고 報道가 나올 정도의 勞動行政이라면 勞動部가 여기에 대한 지도나 감독에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냐 아니면 아예 관심 밖의 문제냐 아니면 서울市 傘下이기 때문에 勞動部로서는 거기에 관여할 수 없는 어떤 法的 문제가 있는 것이냐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勞動部長官 張永喆 지금 李康熙委員께서 新聞記事라는가 그런 것으로 저희들에게 잘 지적을 해 주셨읍니다.

제가 勞動部長官의 입장이든 勞動部의 職員이든 市民이면 누구나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次 監督機關인 서울市廳하고 또 우리는 地方廳이 있기 때문에 우리 地方廳하고 항상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오고 實質的으로 저도 報告를 받고 있읍니다.

그런데 勞使間의 문제는 어떤 경우에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요소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서로 當事者間의 문제이기 때문에 指導 監督에 한계가 있어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地下鐵이 하루속히 정상적으로 稼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한 지금 籠城中에 있는 組合員들도 하루속히 직장에 복귀해서 地下鐵이 正常運行되도록 이렇게 하겠읍니다.

○李康熙委員 勞動部가 하는 業務가 너무 消極的이라는 질타의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아까도 다른 委員님이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오히려 政府側이 罷業을 유도한 것이 아니냐 하는 不信問題가 물론 他委員會지만 우리 國會에서까지 거론되었다는 자체는 우리 政府로서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 勞動部가 어느 한계는 있겠지만 警察에 의한 公權力이 개입하는 결론을 가져오기 보다는 사전에 보다 積極的으로 監督權이나 指導權을 발동해서 勞動部의 監督權이 선행되고 또 그것에 대한 指導權이 먼저 이행된다면 적어도 警察에 의한 公權力問題는 勞使問題에 큰 파급을 안 가져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잉진압이다 무엇이다 하는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勞動部에서 최대한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現代重工業에 대해서 몇가지만 質問을 드리겠읍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勞動部側에서 알고 계시는 것같아 質問을 드리는데 오늘 言論에 보니까 會社가 勤勞者들한테 2億의 損害賠償請求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勞動部가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읍니까?

○勞動部勞使指導官 金相男 말씀올리겠읍니다.

會社側에서 그 동안의 피해액을 산정해서 이원건외 45名에게 2億원의 損害賠償請求의 訴를 제기키로 했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있읍니다.

○李康熙委員 本委員이 質問을 드리는 것은 勞動部가 監督權이나 指導權으로 會社의 이유가 適法하다고 사료된 것이 있느냐 그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냥 企業이 勤勞者側에게 요구해서 새로운 勞使紛糾의 양상이 되고 또 勞使問題에 더욱 暗雲을 깃들이는 문제로 새롭게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勞動部가 그에 대해서 適法與否를 판단해야 되는데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읍니까?

○勞動部勞使指導官 金相男 확인을 해보겠읍니다.

○李康熙委員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다음에 확인을 해 보세요.

企業이 勤勞者에게 損害賠償을 청구하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니었지요. 더구나 大企業에서 勞使紛糾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勞動部로서는 어떻게 指導를 하고 어떤 판정을 해주는가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니까 이것은 깊이 개입해서 판정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質問을 드리겠읍니다.

다른 企業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많은 논란이 있었읍니다마는 現代重工業이 防產業體가 되어서 作業場을 이탈할 때는 兵役特例法에 의해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會社가 주장하는 양상이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보면 勞使問題가 어떤 解決點으로 가기 보다는 점점 極端的으로 치닫는 문제가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勞動部는 어떻게 指導하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勞動部長官 張永喆 물론 작은 것이 점점 커지는 경우도 있읍니다마는 우선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臨時執行部가 구성되어가지고 새로운 執行部가 구성되면서 勞使間에 團體交涉이 주이질 때 李委員님이 지적하신 여러가지 문제를 저희들이 적극 指導 調整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李康熙委員 다음으로 이것은 서울地下鐵公社하고 現代하고 동일하게 한꺼번에 答辯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質問을 하겠읍니다.

우선 서울地下鐵公社에 있어서는 爭議調整法에 대한 合法性與否를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現代重工業에 대해서는 罷業指導部 서대수委員長 그리고 會社側 이 3者가 지난해 12月12日이후부터 서로 위반한 사항이 있지요? 적어도 指導를 하려면 勞動部가 판단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처리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勞使指導官 金相男 우선 서울地下鐵公社 合意覺書 不履行을 이유로 이것이 爭議調整對象이 되느냐 이런 요지의 물음이 있읍셨읍니다.

먼저 爭議라고 하면 勤勞時間 厚生 解雇 기타 待遇등 勤勞條件에 관한 勞動關係 當事者間의 주장 불일치로 인한 紛爭狀態인 利益紛爭을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團體協約등 勞使合意事項의 不履行에 따른 분쟁은 소위 權利紛爭으로서 이는 정당한 爭議行爲의 대상이 될 수는 없읍니다.

그런데 금번 서울地下鐵 勞使紛糾의 경우는 88年10月5日字 合意覺書內容中에 第3項 근무형태의 변경과 보수제도의 개선은 기 확정된 내용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勞使交涉에 의해서 개선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利益紛爭에 해당된다고 하겠읍니다.

따라서 서울地下鐵勞使紛糾는 權益紛爭과 利益紛爭이 상호복합되어 있으므로 利益紛爭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爭議行爲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다만 勞組側에서 서울市에 요구한 組合長釋放이라든지 公社社長의 退陣問題는 勞使問題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爭議行爲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委員會의 仲裁對象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李康熙委員 아니 거기에서 爭議調整法의 合法性與否를 質問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런 罷業問題로까지 발전되었는데 절차나 모든 것들이 合法的으로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勞動部勞使指導官 金相男 勞動組合의 罷業行爲는 中央勞動委員會에서 이미 仲裁回附決定을 한 바 있기 때문에 冷却期間中의 罷業으로 그것은 不法입니다.

다음 現代重工業의 勞組 罷業指導部側이라든지 서대수委員長側 會社側의 違法問題에 대해서는 지금 각각 다 告訴 告發 등이 되어 있어서 司法處理中에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李康熙委員 3者가 다 각기 告發되어 있읍니까?

○勞動部勞使指導官 金相男 예. 다 告訴 告發되어 있읍니다.

○李康熙委員 그러면 勞動部가 그것에 대해서 告發하기 이전이나 이후에 法的으로 처리할 문제는 없읍니까? 勞動部로서 3者에 대해서 勤勞基準法이나 爭議調整法 이런 것에 의해서 판단할 기준은 없읍니까?

○勞動部勞使指導官 金相男 지금 현재 現代重工業의 罷業自體는 現代重工業이 防產業體

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 동안의 暴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當事者間에 다 告發이 되어 있어서 司法處理中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李康熙委員 지난번에 勤勞監督官들에 대해서도 좀 더 사기진작을 시켜야 되겠다. 그럼으로써 勞使問題에 대한 監督權을 좀 더 活性化시키고 또 勞動行政에 대해서도 活力素를 불러일으키자 하는 것에 특별히 우리 國會 勞動委員會의 많은 委員들이 뜻을 합해서 豫算問題라든가 여러가지 문제를 감안했는데 지금 달라지는 것이 없읍니다.

그러니까 蔚山도 特別監督官이 나갔느니 指導班이 나갔느니 여러번 했지만 勞動部가 실제로 어떤 行爲를 한 것은 전혀 없읍니다.

문제가 되면 市廳 그렇지요! 勞動部自體가 무엇을 했느냐 이것입니다.

결국 會議 한번 같이 合席했다 하는 것으로 그것이 全體의 指導고 監督權이라면 勞動行政은 한심스럽습니다. 勞動部가 監督權을 가지고 司法權을 가지고도 전혀 그것을 정당하게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警察의 兵力이 投入되고 軍人이 들어갔다는 오해를 받고 그것이 擴大解釋되고 不信을 받게 되는 문제가 왜 생기도록 하느냐 이것입니다. 물론 限界가 있겠지만 勞動部가 積極的인…

○勞動部長官 張永詰 예. 李康熙委員께서 조금 전에도 그 문제를 제기하시고 지금도 다시 그 말씀을 하셔서 勞動行政을 맡은 責任者로서 내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勞使紛糾가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또 與件에 따라 또 解決의 問題點에 따라 어려운 면도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변명같은 이야기라서 더 말씀 안드리겠읍니다.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이 勞使紛糾解決에 좀 더 豫防的인 측면이나 또 積極的인 문제해결의 측면에서 다시 한번 하겠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면서 그 동안에 勞動行政에 대한 여러가지 비판에 대해서도 제가 잘 感해서 또 앞으로 勞動行政에 參考로 해서 일하겠읍니다.

○李康熙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令培 잠시 停會를 했다가 續開하겠읍니다. 20分만 停會하겠읍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8時37分 會議中止)

(17時59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令培 會議를 續開하겠읍니다.

質疑를 계속하겠읍니다. 李相洙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洙委員 지금 國民 全體가 地下鐵問題에 관해서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아마 우리 國會 勞動委員會가 특별하게 관심을 보이고 오늘 이렇게 소집되어가지고 長官께 質問을 하고 있는데 사실 本委員이 質問에 答辯하시는 자세를 보니까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왜 그렇게 姑息的인 대답으로 일관하시고 무성의한 答辯을 계속 하는지 알 수가 없읍니다.

우선 이것부터 한번 묻겠어요 아까 同僚委員인 韓光玉委員께서 紛糾解決의 當事者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勞使가 當事者다 이렇게 말씀했지요? 이 事件의 紛糾를 지금 解決할 解決能力이 있는 사람이 勞使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내가 확인하고 싶은데…

○勞動部長官 張永詰 解決의 當事者는 서울地下鐵公社 하고 勞組…

○李相洙委員 아까 韓光玉委員께서 이 地下鐵 勞使紛糾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고 물으니까 勞使當事者라고 얘기한 것 처럼 보이는데…

○勞動部長官 張永詰 예. 우선 當事者는 勞使間이 當事者라고 보고 있읍니다.

○李相洙委員 그렇게 파악을 하고 계신다면 地下鐵의 지금 勞使紛糾의 原因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고 계신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長官께서 잘 아시리라고 보니까 다시 한번 묻겠읍니다. 지금 地下鐵 勞使紛糾가 解決되려면 어떤 문제가 解決되면 解決됩니까?

○勞動部長官 張永詰 지금 告發에 대한 取下問題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李相洙委員 딱 그것 하나지요? 告發이 取下되고 拘束者가 釋放되면 지금 지하철 노사분규는 해결되지요! 어떻습니까?

○勞動部長官 張永詰 예.

○李相洙委員 이미 合意覺書는 이행하겠다고 서울市長도 몇번이나 천명하고 마지막 단계에서도 지금 보증서명하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政府에서는 그 문제에 관해서는 들어 주겠다고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勞動部長官 張永詰 예.

○李相洙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紛糾를 解決할 當事者가 누굽니까? 지금 勞使間입니까? 告訴를 取下하고 拘束者를 釋放해야 될 當事者가 누구지요?

○勞動部長官 張永詰 告訴를 取下하는 것은 告訴를 제기한 서울地下鐵公社입니다.

○李相洙委員 拘束者를 釋放하는 문제는요?

○勞動部長官 張永詰 그것은 檢察廳이라고 생각합니다. 法務部…

○李相洙委員 勞動部에서는 權限과 責任이 없읍니까?

○勞動部長官 張永詰 거기에 대한 어떤 責任은 없읍니다마는 저희들이 정상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李相洙委員 責任이 없다니까 내가 물어보겠읍니다.

○勞動部長官 張永詰 직접적인 責任은 法執行人의 權限이니까…

○李相洙委員 지금 職權仲裁에 회부했다고 했지요?

○勞動部長官 張永詰 예.

○李相洙委員 職權仲裁에 회부할 때는 行政機關의 요청이 있으면 勞動委員會가 회부결정을 하지요? 勞動委員會가 도대체 뭘 仲裁할 수 있다고 해서 이 문제를 職權仲裁에 회부했읍니까? 仲裁를 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勞動部長官 張永詰 地下鐵公社의 요구에 의해서 했읍니다.

○李相洙委員 公社의 요구가 있으면은 勞動委員會에서 회부할 것인가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뭘 仲裁하겠다고 仲裁決定을 했읍니까?

○勞動部勞使指導官 金相男 勞動委員會에서 仲裁는 勞動委員會에서 판단할 것으로 압니다마는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동안 勞使當事者間에 다툼이 있었던 이행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 이행하도록 하고 또 이행 과정에서 勞使當事者間에 협의할 사항은 협의해서 仲裁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李相洙委員 성실하게 答辯해 주세요.

지금 合意覺書에 대해서는 合意가 다 되어 가지고 市長이 署名까지 하겠다고 하고 한가지 문제처리가 안된 것이 告訴取下問題인데 도대체 勞動委員會가 어떤 것을 仲裁하겠다는 얘깁니까? 仲裁할 대상이 없어요. 仲裁한다고 했기 때문에 15日동안 罷業할 수 없게 되고 그것때문에 不法이 되어서 처벌받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해 주세요. 뭘 仲裁한다는 얘기인가요? 다 合意되어 있지 않습니까?

○勞動部勞使指導官 金相男 우선 勞動委員會에서는 勤務形態및 報酬制度改善에 관한 것은 仲裁對象이 된다고 보고 있읍니다.

○李相洙委員 그 부분에 관한 다툼이 있나요? 勤勞條件問題에 관해서 地下鐵과 組合사이에 다툼이 있나요?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勞動部勞使指導官 金相男 當事者間에 그 내용에 대해서 결정된 바가 없읍니다. 서울市地下鐵公社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발표만 지금 하고 있읍니다.

○李相洙委員 勞動委員會에서는 行政機關이나 當事者가 職權仲裁를 요청했을 때는 신중을 기해서 回附決定을 해야 됩니다.

職權仲裁에 대한 回附決定을 일종의 罷業을 못하도록 막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되요.

이번에 서울市地下鐵問題를 보니까 전연 仲裁할 내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市勞動委員會가 職權仲裁回附決定을 한 것은 한마디로 다음날 罷業이 예고되어 있으니까 그 罷業을 不法化시키기 위해서 職權仲裁回附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15日間 冷却期間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勞動爭議調整法으로 처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지금도 仲裁할 것이 있나요?

○勞動部勞使指導官 金相男 勞使間에 서울市에서 市長이 약속을 했다고는 하지만은 勤務形態 報酬制度改善을 포함해서 勞使間에 내용이 결정됐다고는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李相洙委員 그러면 勞動部가 지금 紛糾가 있다고, 강변하는 것입니까? 兩者間에 紛糾가 없는 부분에 관해서도 紛糾가 있다고 仲裁할려고 든다는 것입니까? 솔직히 잘못된 것은 시인하세요.

지금 勞動部가 當事者間에 合意되어 가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 문제도 紛糾對象이 되어 가지고 仲裁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勞動部勞使指導官 金相男 그렇지 않습니다.

報酬制度改善이라든가 勤務形態變更은 아직도 그 내용이 없다고 보고 있읍니다.

○李相洙委員 어때요? 지금 勞動委員會에서 仲裁할만한 勤勞條件에 관한 문제는 없지요? 무엇이 있읍니까?

○勞動部勞使指導官 金相男 勤務形態를 바꾼다든가 報酬制度改善에 대해서는 仲裁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李相洙委員 그 문제에 관해서는 李委員이 職權仲裁回附한 의도를 물었으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읍니다.

어쨌든 勞動委員會가 부당하게 職權仲裁回附한다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16日 地下鐵罷業은 不法이 되고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勞動組合員들이 拘束되었다는 사태가 야기되었다는 것은 勞動部에서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다음에 長官께 물어 보겠읍니다.

15日밤 總理가 주재하는 會議에 참석한 일이 있지요? 그 때 누구누구 참석했읍니까?

○勞動部長官 張永詰 그때 國務總理하고 法務部長官 內務部長官 서울市長하고 저하고 참석했읍니다.

○李相洙委員 거기에서 막바지에 地下鐵勞組에서 告訴 告發을 取下해주면 내일 罷業을 안하겠다 이런 요청을 해왔고 계속해서 合意하기를 요구했는데 끝내 그 자리에서 그러지 않고 告訴 告發은 取下할 수 없다라는 결정을 한 것으로 아는 그런 결정을 한 이유는 어디에 있읍니까?

○勞動部長官 張永詰 그래서 서울市長의 報告에 의하면은 11時부터 會議를 하면서 이것은 告訴를 取下하고 이 문제가 아니고 우선 罷業을 하지 않고 正常操業을 하면은 현재 告訴가 된 몇가지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告訴가 된 것을 正常操業을 하면은 정상 참작을 해가지고 關係當局에 최대한의 협조를 요청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勤勞者들이 勞組代表들이 거절한 줄로 압니다.

○李相洙委員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勞動組合에서 告訴告發만 取下해주면 내일 罷業을 안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끝내 그것을 수용하지 않고 告訴 告發을 取下할 수 없다 강행하라 이런 결정을 總理主宰會議에서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을 제가 묻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그같은 결정을 내렸읍니까?

○勞動部長官 張永詰 방금 서울市長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李相洙委員 오히려 總理께서는 솔직하게 얘기하시는데 지금 長官께서는 答辯조차도 성실하게 하지 않는 것같습니다.

總理가 저희들이 갔을 때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십니까? 다시한번 묻습니다. 總理答辯을 제가 얘기하기 전에 먼저 長官께 묻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했읍니까?

○勞動部長官 張永詰 이것은 방금 서울市長이 얘기한대로 正常操業을 하면은 지금 法에 저촉되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 關係當局에 협조를 요청하고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렇게 된 문제의 爭點입니다.

○李相洙委員 그것은 東問西答式인데 다시 묻겠는데요.

바꾸어 얘기하면 告訴告發을 取下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한 이유가 뭡니까?

○勞動部長官 張永詰 그것은 견지한 이유에 대해서는 法을 위반했으니까 일단 司直當局에서 告發이 되고 司直當局에서 無賃乘車에 대한 문제 기물 파괴에 대한 문제 등 告發을 했으니까 正常操業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노력하겠다는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勞組側이 못받아주면 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이지요.

○李相洙委員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 일단 勞組에서 法을 어긴 부분에 관해서는 合意를 하더라도 용서할 수 없다는 그런 취지에서 그 부분을 봐줄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勞動部長官 張永喆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 당시 분위기로 봐서는 正常操業만 하면 政府에서 최대한으로 告發한데서 협조 요청하면은 최대한으로 노력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李相洙委員 도대체 그와 같은 答辯이 성실한 答辯입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答辯말고 그 당시 地下鐵 勞組가 요구했던 수용에 대해서 그런 答辯이 과연 성실한 答辯이고 그 당시 紛糾를 해결할 수 있는 答辯이라고 보십니까?

○勞動部長官 張永喆 罷業하지 않고 正常的인 操業을 한다면 하는 어떤 전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李相洙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 그와 같은 答辯을 勞組側이 했을때 勞組가 罷業을 멈추고 操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읍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당시에 答辯을 한 것입니까?

○勞動部長官 張永喆 先後의 개념은 어떻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勞組側에서 正常操業을 하면 그것은 서울市長이 또 그런 이야기를 勞組委員長 보고 했기때문에 그것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李相洙委員 차라리 정확하게 입장을 밝히면 좋겠어요. 長官으로서 한계도 밝혔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당시 勞組가 그와같은 요청을 했을때 政府에서는 합의를 하더라도 이미 어긴 犯法事實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벌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벌백계의 示範케이스로 삼겠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결정을 했다고 總理는 얘기를 했읍니다.

○勞動部長官 張永喆 사실은 그때 분위기로서 서울市民의 발을 묶는 것이고 市民들에게 불편을 주니까 이것은 勞組側에서 實質的으로 하면 서울市長이나 이런 분들이 그렇게 關係機關과 협조를 해서 하겠다 하는 것은 委員님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李相洙委員 勞動部長官으로서 紛糾를 해결해야 할 입장에 있다고 생각되면 그 당시 告訴를 取下하더라도 그것이 親告罪가 아닌 이상 처벌을 政府에서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데 社長이 告訴를 取下하도록 그 정도의 指導力도 발휘할 수 없나요? 만일 그 당시 社長이 告訴를 取下했으면 紛糾는 이렇게 번지지 않습니다. 사실 그 당시 罷業 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長官도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서 똑같이 告訴를 取下하면 안된다 한번 告訴를 取下하면 앞으로 不法的인 爭議는 계속되고 일단 그런 不法的인 爭議가 있은 다음에 다시금 합의를 하면 그만 아니냐 이런 식의 慣例를 남긴다. 이번에는 무엇인가 보여주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던데요.

○勞動部長官 張永喆 저는 그렇게 말을 한 일은 없읍니다. 단 서울市長이 이야기한 그 내용이 주였읍니다.

○李相洙委員 그리고 本委員이 정말 안타깝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勞動者들을 拘束할 때에 거기에 참여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고 指導力을 발휘했으면서도 막상 지금 釋放問題가 가장 중요한 紛糾의 妥結點인데 그 문제에 관해서 長官께서는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하니까 전혀 나는 모르겠다 法의 문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拘束을 시킬 때는 참여해서 같이 拘束시키자 해놓고 釋放問題에 대해서는 왜 발을 빼는 것입니까?

○勞動部長官 張永喆 저는 拘束에 관해서도 참여를 한 일이 없고 사실은 이 案이 저희들은 勞組側에서 받아 주었으면 하는 제 생각이었읍니다.

○李相洙委員 어때요. 지금 拘束된 사람들은 勞動爭議調整法 위반도 포함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搜査나 調査를 勞動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그럼 이미 勞動部長官께서도 法的인 측면에 권한이 지금 현재 있읍니다.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法務部가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檢事가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長官께서도 調査를 해가지고 善處하겠다든지 檢事한테 不拘束 稟申을 올리겠다든지 충분히 어떠한 얘기를 할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왜 長官께서는 法的인 문제니까 아무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나요? 지금 勤勞監督官들이 調査하지 않고 있읍니까?

○勞動部長官 張永詰 지금 勞動爭議調整法하고 一般 刑事法하고 같이 병합이 되어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李相洙委員 그러니까 勤勞監督官들이 현재 調査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長官의 指揮下에 아래 勤勞監督官들이 調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꾸어 얘기하면 그럼 長官도 현재 이 문제에 관해서 裁量權을 발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上部에 建議하고 稟申할 수 있는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勞動部長官 張永詰 委員님께서 法體系를 잘아시겠지마는 저희들은 司法權이 있더라도 指揮體系는 檢察로 되어 있고 그래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正常運行이 되고 이러면 司直當局에 情狀參酌이 되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答辯을 드리겠읍니다.

○李相洙委員 어떻습니까? 지금이라도 大統領이나 이런 분한테 建議해가지고 拘束者들을 釋放하고 地下鐵問題를 正常化시킬 그런 노력을 할 어떤 입장은 안가지고 있읍니까?

○勞動部長官 張永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大統領께 직접 建議해서 大統領께서 지시하실 사항이 아닌 줄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司直當局에서 처리할 문제인데 그래서 하루빨리 地下鐵이 正常化되면 司直當局에 協助要請을 하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李相洙委員 지금 아주 長官께서는 두루뭉수리 하고 무성의한 答辯을 하시는데 여기 指導方案 봅시다.

도대체 組合員의 조속한 作業場 復歸를 유도하여 地下鐵 正常運行을 도모한다 어떻게 組合員의 조속한 作業場 復歸를 유도하겠다는 것인지 具體的인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앞으로 뭘하겠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알 수 없어요.

○勞動部長官 張永詰 勞動部와 地下鐵公社와 협의를 해서 사실은 地下鐵이 市民의 발이고 市民에게 여러가지 交通에 불편을 주고 또 社會的으로 물의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협조를 서로 地下鐵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李相洙委員 차라리 勞動部長官의 權限의 한계밖에 있다든지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든지 이러면 차라리 저희들도 이해를 하겠는데 마치 長官께서 말씀하신 것을 종합하면 이 事件의 紛糾가 지금 어떻게 해야만 풀린다는 것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밖에 내드릴 수 없읍니다.

지금 현재 紛糾가 해결되려면 당장 拘束者釋放問題가 해결되고 告訴가 取下되어야만 이 紛糾가 해결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떤 見解를 갖고 있기에 이같은 組合員의 조속한 作業場復歸를 유도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勞動部長官 張永詰 그것은 委員님이 잘 아시겠지만 法의 處理問題이기 때문에 勞動部長官으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정상참작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建議 이상은 할 수 없읍니다.

○李相洙委員 사실 답답한데 예컨대 法務部長官이나 勞動部長官은 이 문제에 관해서 서로간에 協議하고 앞으로 勞使紛糾를 어떻게 타결하면 좋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충분히 長官間의 協議와 협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答辯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최선을 다해서 法務部長官하고 협의해 가지고 善處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자세가 옳습니까?

○勞動部長官 張永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李相洙委員 그런데 방금 뭐라고 했읍니까? 法의 문제는 내 소관이 아니라면서요?

○勞動部長官 張永詰 제가 이것을 바로 풀어주지 못하는 입장이 法의 문제고 여러번 이야기 했읍니다마는 韓光玉委員님이나 金炳龍委員님이나 李康熙委員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런 것에 대해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여러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했읍니다.

○李相洙委員 도대체 아까 盧武鉉委員도 얘기했지만 長官께서 答辯을 그렇게 하시면은 우리가 質問할 必要性을 느끼지 않는다고요. 사실 좀 성의있게 다시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여기 指導方向이 나왔는데 앞으로 組合員의 復歸를 유도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겠읍니까? 具體的인 見解를 들어 보겠읍니다. 그냥 폼으로 써놓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슨 計劃이 있읍니까? 써놓았으면 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勞動部長官 張永喆 그것은 地下鐵公社하고 勤勞者들 하고 우리 勞動部로서 하는 역할은 하루속히 正常化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한 誘導策 아니겠읍니까?

○李相洙委員 그러니까 正常化되도록 무엇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同語反復的인 얘기를 하지맙시다. 우리가 뭘 하겠읍니까? 하면은 노력하겠읍니다. 내용이 없는 얘기입니다. 왜 자꾸만 同語反復的인 얘기를 하세요?

○勞動部長官 張永喆 지금 현재 말입니다. 委員님 아시겠지만 不法罷業中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勞動者들에게 不法罷業이니까 하루속히 職場에 復歸를 하고 그래서 正常化 되면 사실은 刑事訴訟法上 公務員이 職務와 관련된 것을 告發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되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그것을 告訴를 取下하라든가 文書로 어떻게 하라고 할 수 없읍니다마는 이것이 正常化 되도록 쌍방간에 노력을 해 가지고 저 자신도 法務部라든가 서울市長하고 協議를 해서 최대한으로 정상을 참작해서 협조요청을 하겠다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李相洙委員 16日 아침 새벽에 強硬鎭壓할 때 어디계셨읍니까?

○勞動部長官 張永喆 집에 있었읍니다.

○李相洙委員 強硬鎭壓은 勞動部하고는 하등의 의논없이 警察이 단독으로 결정해서 한 것입니까?

○勞動部長官 張永喆 不法罷業을 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것은 法의 執行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李相洙委員 아니 뭘 할 수 있다라고 물론 말씀할 수 있겠는데 그 중요한 勞使紛糾가 일어나고 있고 罷業이 시작된 다음에 全 서울市나 國民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데 그 많은 警察이 투입될 때 勞動部에서는 옛날 安康처럼 그냥 방관하고 있었읍니까? 거기에 관여해서 같이 결정해 가지고 투입하자고 이렇게 決議에 참여했읍니까?

○勞動部長官 張永喆 투입하자고는 決議를 안하더라도 그럴때는 不法罷業에 대한 法的措置는 治安當局에서 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李相洙委員 그러니까 罷業후에 警察力이 투입된데 대해서는 勞動部에서는 전연 모르고 관여하지도 못하고 또 무기력하게 다른 部에서 하는 것만 보고 있었다는 말씀인가요.

○勞動部長官 張永喆 그것은 治安當局에서 거기에 대한 不法罷業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읍니다.

○李相洙委員 그것이 治安當局만의 문제입니까? 勞動部에서 관여하고 罷業을 풀고 하는 문제는 가장 중요한 擔當部署가 勞動部 아닌가요? 그런데 왜 勞動部에서 결례되는 말씀같지만 집에 계시면서 도대체 그 많은 警察力이 동원되는데 묵과하고 있었읍니까? 최소한 決定過程에 참여라도 해가지고 의견을 개진하고 이단계에서는 문제가 있다든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勞動部가 政府內에서 어떤 指導力을 가지고 있는지 알수가 없고 지금 여기 나와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지로는 모든 決定過程에 참여해 가지고 오히려 勞動政策을 강력하게 밀고 나가는데 앞장을 서고계신지 알수가 없읍니다. 어느 쪽입니까? 전연 政策決定에 참여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참여하면서…

○勞動部長官 張永喆 저는 勞動部의 역할은 勞使間의 産業平和를 기한다고 그러더라도 제일 우선은 勞動者의 權益과 福祉增進을 위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行政도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李相洙委員 더이상 묻지 않겠어요. 물어봤자 계속 반복된 얘기인데요. 現代問題만 해도 지금 召集權者 指名要請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市長이 지금 뭐 아까 두가지 이유를 대면서 召集權者 指名을 안해주고 있는 모양인데 市長에 대해서 勞動部長官이 그런 문제에 관한 指揮監督權이 있읍니까 없읍니까?

○勞動部長官 張永喆 勞政業務에 대해서는 指揮監督權이 있읍니다.

○李相洙委員 그러면 옛날 國會調査團이 내려갔을때 蔚山市長이 얘기하기를 만일에 勞

動組合이 그런 申請을 해오면 申請한 날까지 포함해 가지고 3日內로 해 주겠다고 우리한테 약속을 했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도 지금 막연한 이유를 붙이면서 안해주고 있는데 勞動部는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왜 관여하지 않습니까?

○勞動部長官 張永詰 그것이 아까 報告를 드린 대로 서태수 現 勞組委員長 執行部側에서 두가지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市에서는 그에 대한 것도 異見에 대해서는 충분히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行政의 한 절차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었읍니다.

○李相洙委員 서태수 執行部가 異議만 제기하면은 일단…

○勞動部長官 張永詰 누가 異議를 제기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行政의 한 절차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李相洙委員 그 문제도 勞動部가 指導力을 발휘하면은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勞動部가 방치하고 오히려 방조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勞動部長官 張永詰 앞으로 여러가지로 委員님께서 저희 勞動部의 位相에 대한 정립이라든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도 아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충분히 李委員님의 뜻을 잘 알겠읍니다.

앞으로 저도 勞動行政을 맡은지 이제 한 3個月 되었읍니다마는 좀 더 모든 문제를 積極的이고 問題解決에 접근하는 노력을 해서 實質的으로 勞使問題가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勞動行政力을 집중해 나가겠읍니다.

죄송합니다.

○李相洙委員 結論的으로 제가 물어보겠읍니다.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서 政府에서 中間評價를 연기했읍니다. 그렇지만 며칠전만 해도 政府는 中間評價를 강행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政府는 6·29宣言이후에 87年度 8月에 玉浦勞使紛糾를 과장 歪曲報道해가지고 그때 勞動者들을 過激示威로 몰아서 國民의 輿論을 등에 업고 강력히 대응해서 처벌한 다음에 그것을 政局의 主導權의 어떤 장악의 계기로 삼았읍니다. 그래서 大選에서 安定心理에 호소해서 승리를 하는 한 일조를 이루었읍니다. 그런데 지금 政府는 3日前 4日前에 政府의 의도인데 地下鐵 勞使紛糾 現代重工業의 勞使紛糾 이런 것을 방치하고 묵인하고 심지어는 조장해서 國民들로 하여금 勞使紛糾가 만연했다는 어떤 불안감을 갖게 하고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면은 강력한 處罰을 하고 이런 處罰을 통해서 政局의 主導權을 장악하고 나아가서는 國民投票에서 이기겠다 이런 전략이 서 있었고 그 전략을 세우는데 가장 앞장서서 일조를 담당하신 것이 나는 勞動部長官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長官께서는 지금 局面이 바뀌어서 이제 中間評價가 필요없게 되었읍니다. 지금이라도 政府의 方針을 바꾸게해 가지고 勞使問題를 좀 積極的으로 介入해서 풀 생각은 없읍니까?

○勞動部長官 張永詰 앞으로 노력하겠읍니다.

○李相洙委員 앞으로 어떻게 노력하겠읍니까?

○勞動部長官 張永詰 그것은 事案에 따라 그때그때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勞使紛糾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與件에 따라 事件의 紛爭에 따라 복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것이 勞勞間의 문제든 勞使間의 문제든 여러가지 측면에서 또 地方行政과의 문제 이런 것을 전부 綜合的으로 해서 제 자신이 使命感을 가지고 이 問題解決에 좀 積極的으로 나서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李相洙委員 長官께서 노력하는 의지를 갖고 계신다면 지난번 現代重工業問題에 관해서 중재를 시도했을 때 제가 勞動部에 얘기해서 現代重工業에서 4人이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가능하면 연락해서 理事라도 나오게 해라 이런 부탁을 했읍니다.

그런데 會社에서는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어요.

나는 사실 勞動部에서도 그 당시 중재가 성립되기를 원했는지에 대해서 의심을 갖습니다.

○勞動部長官 張永詰 죄송합니다.

오늘 李委員님 그 말씀을 듣고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중재에 대해서는 그 당시 우리 幹部들과 또 제가 그 당시에 常任委員會 할 때 參

席을 안하고 報告를 받고 그랬읍니다마는 그것은 그렇게 그 정도선은 제가 안 나서도 되는 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마침 李委員께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시니까 李委員님께 대단히 現代問題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가지고 해결하시려고 하는 그 충정에 대해서 제가 대단히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勞動部가 먼저 앞장서서 해결하는데 노력을 하고 특별히 委員님들께서 관심을 가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의견교환을 하면서 하고 특히 現代重工業에 대해서 그렇게 해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하시겠다 하니까 저희들도 하겠읍니다.

○李相洙委員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읍니다.

지금 勞動爭議調整法 違反部分에 관해서 調査하고 檢察에 앞으로 의견을 붙인해서 送致를 할텐데 어떻습니까 이번 地下鐵에 있어서 勞使紛糾는 勤勞條件問題에 관해서는 의견의 불일치가 없읍니다.

따라서 중재의 대상이 되는 실체가 없읍니다.

따라서 地下鐵公社가 중재를 신청했다 하더라도 그 직권중재에 회부한 결정을 저는 無效라고 봅니다.

따라서 그 회부한 결정이 無效인 한 地下鐵勞組는 15日의 冷却期間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勞動爭議調整法 違反이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견해라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長官께서는 그 부분에 관해서 무엇의 견해로 송치할 어떤 생각은 없읍니까?

○勞動部長官 張永詰 저희들의 입장에서 이것은 爭議調整法에 대해서는 檢察의 지휘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法의 문제에 대한 것은 또 나중에 결론이 나겠읍니다마는 저 자신은 이런데 대한 李委員님의 충정을 알고 있읍니다마는 李委員님께서도 좀 노력하셔 가지고 正常操業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關係當局에 협조요청을 하겠읍니다.

○李相洙委員 제가 質問한데 대한 答辯을 제대로 안 해주시니까 더 이상 사실 물을 마음이 안 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令培 다음은 金東仁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仁委員 金東仁委員입니다. 저는 말씀을 안 하려고 했읍니다마는 勞動部 答辯이 좀 시원치 않아서 한마디 하고 넘어가야 되겠읍니다.

서울 地下鐵勞動組合의 爭議申告節次는 合法이지요?

○勞動部勞使指導官 金相男 合法입니다.

○金東仁委員 冷却期間도 지났고 다만 직권중재의 위반이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爭議調整法違反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요?

○勞動部勞使指導官 金相男 그렇습니다.

○金東仁委員 그러면 勞動部가 긴급조정도 할 수 있고 公益事業體에 관해서는 그 규모가 크거나 또는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國民經濟를 파괴하거나 國民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할 때에는 勞動部長官이 中央勞動委員會 委員長에게 미리 의견을 붙여서 긴급조정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것을 하지 않고 오늘 國會 常任委員會에서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아지고 國會 常委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政策的으로 앞으로 勞動部長官 또는 서울市長이나 法務部長官에게 이 拘束者에 한해서는 빠른 時日內에 釋放하도록 우리가 촉구하고 勞使間에 合理的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勞動部長官님께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現代重工業問題도 사실상 소집권자지명을 했읍니다마는 아직 總會召集에 대해서 소집권자를 결정 못한데 대해서는 그 이유가 강제 서명날인을 했다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보아지는데 이러한 문제를 조속한 時日內에 勞動部地方事務所長께서 이러한 문제를 빨리 해결해서 소집권자 지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國會 常任委員會에서 할 문제가 아니예요.

이것은 勞動部次元에서 적극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데 勞動委員會가 필요없는 시간을 보내가면서 이러한 政策質疑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아져서 앞으로는 勞動部長官께서 이러한 문제를 적극 해결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本委員의 말씀을 마치겠읍니다.

○委員長 金令培 다음은 李海瓚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海瓚委員 장시간동안 여러 同僚委員께서 좋은 質問을 하셨고 勞動部에서는 答辯을 하셨는데 이런 勞動委員會의 會議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의심을 합니다.

지금 勞動部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오셔 가지고 퇴근시간도 한참 지난 이 시간까지 고생들 하고 계신데 고생하면 무엇합니까?

일찌감치 퇴근하셔가지고 집에 가서 소주라도 한잔 잡수시고 그러는 것이 낫지 長官께서 昨年 年末에 就任하신 이래 지금까지 하신 것중에서 가장 뚜렷한 업적이 될만한 것 한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이것은 내가 勞動部長官으로서 國民앞에 얘기해 가지고 일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단 한가지만 얘기해 보십시오.

지금 就任하신지가 석달 됐지요?

그 기간동안에 長官이라는 職責은 대단히 중요한 職責입니다.

지금 勞動者가 우리 社會에 家族까지 합치면 2千萬 가까운 勞動者家族이 살고 있는데 사실 農林水産部같은 경우는 지금 該當家族이 이제 1千萬도 안 됩니다. 豫算規模는 勞動部 보다 훨씬 많겠지만 그 만큼 産業社會化되면서 勞動部의 職責 위치가 중요해지고 따라서 長官의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고 今年에 들어와서 勞動問題가 심각한 문제가 굉장히 많았읍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서 長官께서 3個月동안에 일을 내가 長官으로서 소신있게 하나를 해놓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만 말씀을 해 보십시오.

○勞動部長官 張永喆 李海瓚委員께서 대단히 저에 대한 質疑를 하셨는데요 저도 이 國會 勞動委員會에도 같이 있었으면서 勞動問題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있고 또 모든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韓國經濟가 換率의 문제라든가 通商摩擦의 문제 이런 여러가지 요소가 있어서 經濟與件이 어렵다고 그러더라도 특별히 勞使問題가 원활히 해결이 되어야만 韓國經濟가 잘 되어 갈 수 있고 나아가서 이것이 바로 産業平和를 기해서 勤勞者의 權益과 福祉가 증진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고 또 중요성에 대해서도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두드러지게 3個月동안 무엇을 했느냐 그러니까 제 자신이 언뜻 생각나는 것이 없읍니다마는 저도 방금 말씀대로 韓國經濟라든가 또 우리 國民生活이라든가 勤勞者의 權益이라든가 福祉增進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또 앞으로도 노력할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읍니다.

○李海瓚委員 그러시다는 얘기는 제가 참 愚問을 했다면 대단히 賢答으로 말씀을 잘 하시는데 좋습니다.

다시 한가지만 더 質問을 하지요.

長官께서는 勞動部長官을 해야겠다라고 희망을 하셨읍니까?

처음에 任命을 받기 직전에요?

○勞動部長官 張永喆 그런 희망을 한다 안 한다가 있겠읍니까?

○李海瓚委員 희망을 안 하셨읍니까?

○勞動部長官 張永喆 희망을 한다 안 한다가 없읍니다.

○李海瓚委員 그러니까 改閣直前에 勞動部를 맡아서 하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大統領한테나 다른 사람들 한테 의사를 표명하신 적은 있읍니까?

○勞動部長官 張永喆 없읍니다.

○李海瓚委員 勞動問題에 대해서 종사한 경험이 얼마나 되십니까?

○勞動部長官 張永喆 勞動廳次長으로 있을 때 근무했고 항상 아까 말씀드린대로 勞使問題가 원숙히 해결이 되어야만 産業平和를 기하고 韓國經濟가 잘 될 수 있고 또 그럼으로써 勤勞者의 權益이라든가 福祉가 증

진이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또 저 자신이 勞動委員會에 와서 그런 중요성에 대해서 他委員會 있을 때 보다도 훨씬 절실히 느꼈다 하는 것은 틀림이 없읍니다.

○李海瓚委員 오랜 官僚生活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읍니다마는 勞動行政分野의 官僚生活을 그렇게 많이 하신 편은 아니지요?

○勞動部長官 張永詰 예. 그렇습니다.

○李海瓚委員 따라서 專門家라고 말씀하시기는 어렵겠지요.

물론 勞動者에 대한 애정이라든가 韓國産業社會에서의 産業安定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희망하지도 않았고 또 專門家로서의 경력도 갖추지 않으시면서 勞動部長官에 就任하신지가 3個月 가까이 되었읍니다.

지난 3個月동안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별하게 이것이다라고 할만한 업적을 크게 낸 것은 없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그런 큰 업적을 내실만한 자신이 있읍니까?

○勞動部長官 張永詰 열심히 하겠읍니다.

○李海瓚委員 열심히는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 동안에도 열심히는 하셨지요.

○勞動部長官 張永詰 노력을 했읍니다.

○李海瓚委員 굉장히 열심히 노력은 하셨는데도 별 성과는 없고 그 동안에 야기된 문제를 제가 몇가지 말씀을 드리지요.

豊山金屬의 操業이 재개되었읍니다마는 勞動部로서 별로 중재에 크게 노력을 못 했지요?

公權力介入의 방지도 별로 못 했구요.

○勞動部長官 張永詰 公權力介入에 관해서는 충분히 말씀이 계셨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豊山金屬에 대해서 調整을 하려고 本部에서라든가 물론 國會調査委員會에서도 가셨지만 저희 本部의 局長 課長들이 가서 노력을 하도록 했읍니다.

○李海瓚委員 豊山金屬問題는 제가 여러차례 勞使 쌍방간을 만나 가면서 중재를 해서 操業再開를 했읍니다.

現代重工業問題도 「테러」가 발생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했어도 아직까지 合意「테이블」에 끌어내는 것 조차도 지금 못하고 있지요? 李相洙委員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음에 三星重工業問題도 역시 마찬가지고 大宇精密도 마찬가지고 이런 여러가지 중요한 문제가 한 3個月동안에 발생을 했는데 勞動部가 그에 대해서 한 조치라고 하는 것이 저 스스로 납득이 안 될 정도로 미온적이고 아무런 저기가 안 됩니다.

지금 1年에 勞動部가 豫算이 1,000億 가까이 되지요?

長官께서 1年 豫算을 대충 규모를 모르십니까?

○勞動部長官 張永詰 한 1,000億 된다고 봅니다.

○李海瓚委員 1,000億을 한 가구에 1億씩 나누어주어도 1,000名의 가구가 안정될 것입니다. 1,000萬원씩 나누어 주면 1萬가구가 안정된 생활을 할 것입니다.

勞動部의 財産을 다 팔아서 차라리 勞動者들한테 나누어 주는 것이 더 産業平和를 빨리 해결하는 방법이 아닌가요?

지금 현재 勞動部처럼 한다면은…

흔히 學生들이라든가 勞動運動하는 사람들은 勞動部가 財閥의 앞잡이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일련의 사태의 과정에서 보면 現代도 勞勞紛糾로 몰아가지고 勞使間의 관계는 별로 없는 것처럼 여러번 答辯을 하셨읍니다.

제가 보기에는 徐泰洙勞組라고 하는 것은 勞組가 아닙니다. 「테러」집단이지… 三星重工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總會召集을 그렇게 요구해도 그것을 방해하는 蔚山市에 관해서 勞動部가 行政監督機能을 전혀 발휘를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실정을 사실적인 것을 놓고 반성해 볼 때 財閥들의 앞잡이라는 소리를 면할 수가 있겠읍니까?

勞動部의 設立目的은 勞動者들의 權益伸張과 産業安定을 가져 오겠다는 孔子 말씀같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勞動部가 하는 것은 목적에 어긋나서 財閥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데 얼마전에 三星重工業社長 보세요. 나

勞動組合과 같은 「테이블」에 못앉겠다 우리 勤勞者가 아닌데 내가 왜 앉느냐 한 마디로 財閥들의 社長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傍若無人하고 오만하면 감히 國民을 代表하는 國會 機關에 와가지고 勞動者하고 한 자리에 못 앉겠다는 얘기를 어디와서 합니까?

아까 李相洙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地下鐵같은 경우는 87年 團體協約에서 문제가 되었고 88年 가을에도 罷業危機를 넘겼고 國政監査 같이 해보셨잖아요.

그때 무엇이라고 그랬느냐 하면 시행을 해야 되는데 豫算이 수반되기 때문에 89年 豫算에 반영을 시켜서 來年度부터 시행하고 그 전까지는 號俸으로 산정해서 施行하는 것은 89年度부터 하겠고 그 전까지는 지급은 하겠다 이렇게 했읍니다 豫備費로…

그래 89年 들어와가지고 시행이 안 되었어요. 罷業을 하니까 시행이 됩니다. 그렇지요? 罷業하니까 시행 되었읍니다.

지난 土曜日에 통장에 入金이 다 되었읍니다.

그러니 罷業을 해야 시행된다는 것을 빤히 알고 있는 勞動者들이 勞動部가 직권중재한다고 그것을 기다리고 15日동안 罷業안 하겠소 하고 기다리는 勞動者가 똑똑한 사람입니까 罷業을 해야 돈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罷業을 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입니까?

勞動部가 정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아까 金東仁委員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긴급조정도 할 수가 있었읍니다.

1千萬 서울市民의 발이다 생활상 굉장히 중요한 機關이다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長官께서 그 처럼 市民들을 위해서 勞動行政을 管理를 하신다면 긴급조정을 않습니까?

現代重工業 그렇게 「테러」가 발생하고 그렇게 했어도 아무 해결이 안 되는 것은 勞動部에서 지금 방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中間評價 앞두고서 절대로 해결 못하게 일부러 방조한 것입니다.

보세요. 現代重工業總會가 召集되면 徐泰洙 御用勞組가 무너지게 되어 있읍니다.

무너지면 民主勞組가 서면 會社는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合意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가서 안 나온 것입니다.

會議場 協商할 「테이블」에… 그러고 나서는 다른 쪽을 시켜가지고 말하자면 暴力을 유도한 것이에요.

지금 會社側에서 몇 10名이 다쳤다고 하는데 지금 入院해 있는 사람이 몇 名입니까?

○勞動部勞使指導官 金相男 당초 38名 入院해 가지고 退院한 사람도 있고해서 자세한 숫자는 모르겠읍니다.

○李海瓚委員 한 명 入院해 있읍니다. 지금 한 명…

그 사건이 發生한 지 며칠 되었읍니까? 며칠 안 되었지요? 최근에 暴力事態가 발생한지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한 名인가 두 名이 入院해 있고 나머지는 다 退院했어요. 무슨 대단한 暴力事態가 발생했다고 警察을 要請하고 그럽니까? 만약에 그런 심각한 暴力事態가 발생했다면 警察을 要請하지 않았어도 警察은 暴力에 관한 法律違反罪로 가서 체포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警察이 준비만 해 놓고 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暴力을 그렇게 했으면 現行犯인데 당연히 가서 逮捕해 가지고 懲役을 잡아넣어야지요. 그렇게 暴力을 恣行한 것처럼 위장을 하고 地下鐵같은 경우처럼 여차피 있는 돈 먼저 支給했으면 아무問題가 없을 것… 罷業을 유도해 놓고 支給하면 돈은 돈대로 나가고 市民은 市民대로 불편을 겪고 社會 분위기 어수선해지고 그것을 가지고 中間評價에 써먹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누가 탔니까? 地下鐵을… 전부 月給장이들이 타지 않습니까? 불편하면 勞組가 罷業해서 불편하다 라는 소문을 만들려고 유도를 했던 것입니다.

성리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밤도 깊고 시장들 하실테니까 긴 얘기해 보아야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마는 牛耳讀經이라고 하기때문에 긴 말씀 안 드리겠고 勞動部長官으로서의 희망도 하지 않고 專門的인 경험도 가지고 계시지 않고 지금까지 實績으로 보아서 특별한 것도 없고 오히려 中間評價 분위기에 一助를 했고 이제 統治權者는 中間評價를 안 하겠다고 國民앞에 약속을 했읍니다.

그리고 勞使紛糾가 昨年 年末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社會에 대단히 국민들한테 危機感을 불어넣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問題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勞動部가 거의 束手無策으로 뒷짐을 지거나 幫助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에 일련의 책임을 지고 長官으로서 스스로 辭任할 용의가 없는가 물으면서 質問을 마치겠읍니다. 만일 辭任할 용의가 없다 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解任을 決議할 수도 있읍니다.

○委員長 金令培 더 質疑하실 분 안계십니까?

○李海瓚委員 答辯을 들어 보십시다.

제 質問을 마쳤으니 答辯을 하십시오.

○委員長 金令培 答辯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長官 張永詰 李海瓚委員께서 여러가지 말씀하셨읍니다마는 勞動行政을 맡은 저로서 아주 勞動行政을 全體的으로 勞動部를 잘 하라고 하시는 뜻으로 받아 들이겠읍니다.

○委員長 金令培 韓光玉委員 質疑하십시오.

○韓光玉委員 本委員이 지난번에도 問題를 提起했던 것이고 또 그에 관련된 勞動者들이 제 事務室에 오늘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또 한번 확인하지 않을 수 없어서 時間이 걸리지만 말씀을 드려야 되겠읍니다. 간단하게 하지요.

「모토로라」件인데 말이지요 「모토로라」에 대해서 지금 勞動部에서 調査團을 파견하고 있읍니까? 지금… 精密調査를 하고 있읍니까?

○勞動部勞使指導官 金相男 不當勞動行爲分野에 대해서는 旣調査를 완료를 했읍니다.

그리고 作業環境 등의 問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調査班이 나가 있읍니다.

○韓光玉委員 調査班이 나가서 지금 調査를 하고 있읍니까?

○勞動部勞使指導官 金相男 예. 15日부터 하고 있읍니다.

○韓光玉委員 현재까지의 報告를 받으셨읍니까?

○勞動部勞使指導官 金相男 아직 끝나지 않아서 報告가 綜合이 안되어 있읍니다.

○韓光玉委員 綜合報告를 받지 않았어도 經過報告는 받았을 것 아닙니까?

○勞動部勞使指導官 金相男 아직 받지 않았읍니다.

○韓光玉委員 그런데 本委員이 지금 듣기로는 「모토로라 코리아」 會社에서 지난번에 當 委員會에서 나와 가지고 한 그 答辯 또는 여기서 얘기 한 內容과는 대단히 다른 行動을 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時間을 節約하기 위해서 具體的으로 말씀은 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事務室關係 常勤者 게시판 解雇者原職復職關係 停職者에 대한 名譽回復關係 夏期有給休暇關係 告發 告訴取下關係 이러한 등등을 전혀 지금 勞動者들하고 意見接近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意味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도 보니까 여기 와서 적당히 答辯하고 되돌아가서는 소위 強硬方針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나는 여러 委員들이 지금 이야기를 質疑를 통해서 말씀들을 했지만 勞動部에서 이러한 企業體를 또는 財閥會社의 紛糾가 있었을 적에 도대체 얼마만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또는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아요.

勞動部의 仲裁 勞動部의 노력에 의해서는 財閥이라든지 企業體의 紛糾가 수습된 것이 몇 件이나 있어요? 지금 今年에 들어와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떠한 財閥이라든지 企業體의 紛糾가 있을 적에 勞動部가 仲裁役割을 하고 勞動部가 노력을 해서 이러이러한 데 대해서 수습을 했다 라고 하는 業體가 도대체 어디 있어요? 대보아요. 없지 않아요?

그러면 勞動部의 存在價値가 무엇이냐 이것이에요. 勞動部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勞動部長官 張永詰 오늘 委員들께서 여러가지…

○韓光玉委員 長官 좀 가만 있어요. 勞動部는 어디까지나 勞動者들의 權益을 代辯하고 産業平和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도 企業이 망가져도 좋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企業도 살고 勞動者도 자기의 權益을 찾을 수 있다 하는 그런 側面에서 그래도 勞動者의 權益에 한발짝

더 가까이 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을 보면 勞動部가 무슨 、財閥部라든지 企業部 비슷하게 그런 자세에서 어떻게 勞動者들과 같이 모든 意見을 接近시키며 같은 脈絡속에서 일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勤勞者들이 勞動部를 믿겠느냐 이 말이에요. 勞動部가 오히려 어떤 仲裁役割에 나갔을 적에 잘 수습이 안되는 오히려 逆效果가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을 저는 숱하게 듣고 있읍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 하느냐 이 말이에요. 不信하는 것 아닙니까? 勞動者들에게 不信받는 勞動部가 과연 存在할 價値가 있느냐? 우리가 猛省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지만 여러 委員들이 그 동안에 말씀을 많이 하셨고 해서 내가 줄입니다마는 勞動部의 일대 覺省을 촉구하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겠읍니다.

○盧武鉉委員 質疑 하나 하겠읍니다.

○委員長 金令培 예. 盧武鉉委員 質疑하십시오.

○盧武鉉委員 제가 質疑를 두번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蔚山 現代 여기는 局長級 調査團이 내려가서 調査를 하셨지요?

○勞動部勞使指導官 金相男 예.

○盧武鉉委員 組合員이 1萬9,125名 아닙니까? 그렇지요?

○勞動部勞使指導官 金相男 예.

○盧武鉉委員 그런데 이번에 署名해 가지고 總會召集要求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 市에서 檢討하고 있는 問題點이 두가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두가지 問題點때문에 진작 그것을 안내주고 있다고 하는데 두가지 問題點이 무엇입니까?

○勞動部勞使指導官 金相男 蔚山市에서는 지금 두번 申請이 들어왔읍니다. 제일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일단 하나 반려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처음에 반려할 때는 徐太守勞動組合長이 總會召集을 懈怠하거나 기피한 根據가 없다라고 해서 반려가 되었읍니다.

○盧武鉉委員 이번 件은?

○勞動部勞使指導官 金相男 이번 件에 대해서는 아직…

○盧武鉉委員 그 書類를 가지고 다시 召集要求를 안했읍니까?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안열어 준다 이래가지고 다시 申請을 안했읍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徐太守組合長이 지금 말하자면 쉽사리 總會를 열지 않겠다는 것은 이미 意思가 명백하게 표명됐지 않았읍니까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한번 볼까요? 어떻든…

○勞動部勞使指導官 金相男 召集要求者의 同意가 正常的인 상대하에서 된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 徐太守組合側에서 問題를 삼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盧武鉉委員 그렇습니까? 徐太守側에서 問題를 提起하는데 署名이 自由로운 분위기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異議가 있다 뿐이지 總會를 徐太守가 열지 않겠다는… 몇가지 條件을 내걸고 열지 않겠다는 意思는 분명히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正常操業을 하면서 열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勞動部勞使指導官 金相男 그런 要求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되었다면 雜務整理期間의 여유를 두어서 總會召集을 하겠다 라고 이렇게…

○盧武鉉委員 總會해가지고 雜務整理를 해야지 뭐 總會 마치고는… 總會하면 다시 徐太守가 委員長이 될지도 모르는데 알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알수 없는 일입니다.

總會 해보면 徐太守씨가 갑자기 또 票를 더 얻을는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雜務整理는 무슨 雜務整理를 한다는 말입니까? 總會는 열고 볼 일이지요.

그런데 徐太守씨가 지금 이런 것 내걸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일부터 먼저 하자" 그것은 내걸고 있지요?

○勞動部勞使指導官 金相男 예. 그 얘기는 하고 있읍니다.

○盧武鉉委員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조건없이 열지는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條件으로 내걸 權利는 없는 것 아닙니까?

○勞動部勞使指導官 金相男 그 問題에 대해서는 蔚山市에서도 지금 현재 檢討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필요하다면 慶南地勞委에 承認을 要請하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읍니다.

○盧武鉉委員 그런데 지금 地勞委도 다녀보

았고 中勞委도 다녀보았고 다 다녀보니까 끼리끼리 다 통하고 싸고 하는 것이닙니까? 뻔한 것 가지고 무엇을 地勞委에 물어보고 中勞委에 물어보고 할 것 뭐 있어요? 長官이 한다면 하는 것이지요. 사실 안 그렇습니까? 툭 까놓고 얘기해서…

그런데 署名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본다고 할 적에 몇名 정도가 不自由스러운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읍니까? 勞動部에서는… 蔚山所長한테서 어떤 報告가 왔읍니까? 이 署名받는 데에서 몇 名정도한테 脅迫 공갈을 해가지고 받았다고 報告가 왔읍니다.

○勞動部勞使指導官 金相男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금 판단을 할 수는 없읍니다.

○盧武鉉委員 모르면 어떻니까? 중요한 이 엄중한 時期에 1萬9,000名 組合員이 있는 중에 1萬2,000 몇名 받았읍니까? 1萬2,400餘名인가 그렇지요?

○勞動部勞使指導官 金相男 그렇습니다.

○盧武鉉委員 1萬2,400餘名 線인데 이 중에서 脅迫 공갈이 있으면 몇名이 있겠어요? 가서 한번만 내리다 보면 그 壇上에 올라가서 한번만 내려다 보면 뻔한 것 가지고… 3分의1 이것은 말이오. 손바닥 뒤집기입니다. 3분의1 署名이 안 받아질 것 같습니까? 갔다오신 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협박 공갈 안하면 3分의1 署名 못 받을 것같아요? 1萬2,000名중에 몇 名이 위협받아서 했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러면 다시 이렇게 묻지요. 이 사람들 法을 몰라서 1月이니 1月初나 12月末에라도 이 總會召集要求를 안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내가 권유를 하고 왔읍니다. 지난 번에 가 가지고 1月12日 "제발 당신들은 臨時總會가 12月12日부터 계속 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매일 반복적으로 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뽑은 것은 우리는 정당하다고 얘기하는데 아무리 정당하다고 당신들이 主張해도 勞動部에서 勞動部事務所에서 이것을 認定하지 않는 이상 소위 말해서 끝발좋은 公權力이 認定하지 않는 이상 形式的 適法性을 取得하는 것은 당신들에게 있어서 이 싸움에 있어서의 유력한 戰術的 高地이기 때문에 더럽고 아니꼽지만 하시오" 했더니 안 했어요. 왜 안 했는지 아십니까? 해보았자 어느 놈이 내줍니까? 어떤 놈이 내 줄 것이냐는 것입니다. 指名을 어떤 놈이 해줄 것이냐 이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안하는 이유는 그렇게 저한테 反問하는데 내가 자신있게 내가 責任질께 하는 말을 못하겠더라구요.

이것이 오늘날 勞動行政입니다. 이것이 現實입니다. 勞勞紛糾가 왜 생깁니까? 조금전에 大宇自動車 제가 물었지요? 棄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얼마나 妥當한 棄却할 이유가 있어서… 이제 앞으로 大宇自動車에서 勞勞紛糾가 일어납니다. 왜냐? 合法的으로 勞勞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勞動部에서 봉쇄했기 때문에… 勞動部勞政局 勞動組合課에서 棄却했어요. 長官 이름으로 棄却되었읍니다. 封鎖했기 때문에 大宇自動車에서는 머지 않아 勞勞紛糾가 일어나고 그 勞勞紛糾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罷業籠城에 들어갑니다. 大宇自動車가 罷業籠城에 들어가면 이 나라 經濟가 勞使安定이 되고 經濟가 安定이 됩니까? 輸出이 잘 됩니까?

왜 안 열어 주어요? 말해 보시오. 무엇때문에 棄却했는가 설명해 보라구요. 大宇自動車事件 現代의 件에 관해서는 몇가지 暴力… 地勞委건 어디건 뭐 基準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몇名이 협박에 의해서 찍었느냐고 밝히라니까… 밝히시오! 빨리… 뭐하는 사람들이오? 당신들… 國民들의 稅金가지고 月給받아 먹고 앉아서 財閥들 앞잡이 노릇이나 하고… 그것이 公務員이오? 몇 名이 협박에 의해서 찍었느냐 말이오! 答해요! 그것도 모르고 앉아서 勞動部 報告요? 이것이… 答하시오! 몇 名이 협박에 의해서 찍었는지 答하라고…

○勞動部勞使指導官 金相男 나중에…

○盧武鉉委員 이 엄중한 時期에 나중에 하라?

○勞動部長官 張永詰 지금 현재는 알수 없다고 그러지 않았읍니까? 알아보겠읍니다.

○盧武鉉委員 勞勞싸움을 부추기고 있어! 당신들이… 뭘하고 있어요? 가 指導해야지. 指導해야지 왜 指導 못해?

1萬2,400名중에 몇이 협박에 의해서 찍었느

냐 말이오?

○勞動部長官 張永喆 그것은 제가 알아가지고 나중에 報告를 드리겠읍니다.

○盧武鉉委員 그래 놓고 報告書에다 그 따위로 써요? "徐太守가 이와같은 異議를 提起하고 있다" 提起하고 있으면 그것만 報告하면 勞動部입니까? 그 提起하고 있는 異議가 사실인가 아닌가? 妥當한가 妥當하지 아니한가? 밝히고 妥當하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하겠다 妥當하므로 이렇게 하겠다 答을 해 주어야지 國會갖고 노는 것입니까? 이것이…

○勞動部長官 張永喆 그것은 蔚山市에서 分析해야 되는 것을 그렇게 알고 實務的으로 그런 줄 알고 있읍니다.

○盧武鉉委員 勞動事務所에서 調査해야지요.

○勞動部長官 張永喆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알아가지고 報告를 드리겠읍니다.

○盧武鉉委員 大宇自動車 무엇때문에 棄却했는지 한번 얘기해 보시오.

○李海瓚委員 勞政局長 나와서 報告해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勞政局長입니다.

저희 勞動部에서 大宇自動車의 臨時總會召集權者指名要請 終結處理한 公文內容입니다. 受信은 召集權者指命要請을 한 이인구씨 앞으로 되어 있읍니다.

"貴下가 89年2月17日 提出한 臨時總會召集權者指名裁定申請에 대하여 貴下의 會議錄 當事者主張을 調査 檢討한 바 아래와 같은 事由로 臨時總會召集權者를 指名하지 않기로 하였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래가지고 몇가지 저희가 理由를 提示를 했읍니다.

첫째 召集權者指名要請事由가 두가지로 要約되는 바… 이것은 申請한 內容中에 있는 얘기입니다. 첫째는 88年12月17日 定期代議員大會時 委員長에 대한 不信任發議案이 可決되었는데도 總會開催를 기피하고 있는지 與否와 둘째는 88年12月27日 委員長의 覺書에 의하여 89年2月28日까지 總會開催를 약속하고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眞實與否의 문제 이렇게 두가지로 우선 테마를 잡았읍니다.

첫째 문제를 檢討해 보면 88年12月17日 代議員들의 不信任發議의 適法性 與否의 問題로서 不信任發議는 特別決議事項으로 在席代議員 3分의2 未達로 否決되었기 때문에 委員長의 總會召集拒否는 勞動組合法 第26條第3項에 의한 總會召集의 忌避나 懈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둘째 문제는 88年12月27日 委員長 覺書에 의하여 89年2月28日까지 약속한 總會 開催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항으로서 委員長側 주장은 89年2月28日까지 總會를 여는 前題條件으로 세가지 사항을 提示한 바 있으나 組合費 횡령 流用部分에 대하여 委員長 承認後 代議員 명의로 聲明書를 발표하도록 되어 있으나 聲明書 내용이 委員長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總會를 열어줄 수 없다는 것이며 貴下가 주장하는 것은 委員長이 받아들일 수 있는데도 이를 承認을 하지 않았다는 다툼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同 覺書의 效力은 勞動關係法上 總會 開催의 義務的 事項이 아니라 信義誠實에 근거한 當事者間의 약속에 의한 委員長의 權限에 속하는 것으로서 勞動組合法 第26條第3項에 의하여 處理될 문제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回信을 해준 바 있읍니다.

○盧武鉉委員 그 결론이 法律的으로 타당합니까? 法律論爭을 좀 할까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타당한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했읍니다.

○盧武鉉委員 總會召集 要求를 할때에 갖추어야 되는 要件이 무엇 무엇입니까? 첫째 總會에서 다룰 要件을 명시해서…

그렇지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그렇습니다.

○盧武鉉委員 要件을 명시해서… 議案을 명시해서 總會召集을 요구하는 사람들 3분의1의 署名을 받아서 委員長에게 組合代表에게 召集要求를 하지요? 그렇습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예.

○盧武鉉委員 그런데 召集해주지 않을 때 召集權者 指名申請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예.

○盧武鉉委員 그런데 議案으로 되어 있는 事由中에서 "組合長不信任에관한件" 이렇게

되어 있을 때 不信任 事由가 있거나 없거나 또는 "組合長解任에관한件" 했을 때 解任에 관한 事由가 있거나 없거나 그것은 檢討할 事項이 못되는 것 아닙니까? 審査할 수 없는 事項 아닙니까? 있고 없음이라는 것은 總會에서 결정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이 件에서는 소위 그 案件으로 내세우고 있는 "不信任에관한件" 이것이 不信任할 事由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기에 대한 審査를 지금 해놓고 있지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大宇自動車 소위 反執行部側이라고 그러면 어떨지 모르겠읍니다마는 反行政府側에서 저희 勞動部에 召集權者 指名要請을 내기 전에 그 전에 自體總會에서 委員長의 不信任 發議를 했다고 그랍니다. 그래서 不信任決議는 規約에 의거해서 在籍 3분의 2이상의 同意가 있어야 通過가 되는데 그 3분의 2이상을 받지 못해서 그 不信任決議案이 否決이 됐읍니다. 그것을 이유로 해서 저희 勞動部에 召集權者 指名要請을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서 저희가 召集權者 指名要請의 妥當性을 두가지로 檢討를 해 본 것인데 첫째는…

○盧武鉉委員 그러면 그 정도하겠읍니다.

다시 묻지요

첫번째 棄却하고 지금 두번째 棄却했지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그래서…

○盧武鉉委員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첫번째 棄却하고 두번째 棄却이냐 아니냐 묻습니다.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그렇습니다.

○盧武鉉委員 첫번째 棄却事由가 무엇입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첫번째 召集權者 指名要請은 兩側을 불러서 저희 勞動組合課에서 指導를 한 바 있읍니다.

○盧武鉉委員 棄却事由가 뭐냐고 물었어요. 事由가 무엇입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그래서 委員長이 自體召集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召集權者 指名要請한 側에서 取下를 했읍니다. 棄却한 것은 아닙니다. 첫번째는… 그런데 그 당시에 세가지 約束을 雙方間에 해가지고 2月28日까지 總會召集하기로 했었는데 雙方間이 約束履行에 대해서 異見이 있었던 것입니다.

○盧武鉉委員 진짜 取下했어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첫번째는 取下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읍니다.

○盧武鉉委員 진짜 取下했읍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첫번째 書類는 사실은 召集權者 指名要請書 處理關係는 저희 行政內部的인 處理節次를 말씀드리면 取下한 것은 課長專決로 했기 때문에 局長한테까지는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棄却한 것은 제 專決로 나갔읍니다. 그리고 召集權者 指名要請을 하려면 二次官 長官決裁를 받아서 中勞委로 넘어가게 됩니다.

○盧武鉉委員 아까 두번째 棄却할 때 두번째 이유중에 "覺書는 當事者間의 約定이므로… 이렇게 되어 있었지요?

○勞動部勞政局長 예. 그렇습니다. 組合法에 의해서 처리될 事項은 아니기 때문에…

○盧武鉉委員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그 당시에 합의가 이루어질 때 만들어진 覺書입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1次 召集權者 指名要請을 取下할 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盧武鉉委員 그때 만들어진 것입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예. 세가지 事項을 약속을 했읍니다.

첫째 勞動部에 提出한 召集權者 指名要請을 取下할 것 또 組合費 橫領 流用에 대해서는 反執行部側에서 문제를 提起했기 때문에 組合費 橫領 流用에 대해서 代議員名義로 聲明書를 발표하되 이것은 事前에 委員長의 承認을 받아가지고 할 것 이런 정도의 세가지 었었는데 그 反執行部에서 委員長 不信任決議 理由의 첫째 주요한 이유가 組合費의 橫領 流用部分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盧武鉉委員 그 이유를 왈가왈부할 이유가 뭡니까? 橫領事實이 있거나 없거나…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當事者間에 그렇게 覺書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覺書中에 제일 중요한 一方的인… 소위 委員長側에서 말할 때 一方的인 組合費 橫領 그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안

해 주었기 때문에…

○盧武鉉委員 그러면 좋습니다.

어쨌든 이 總會 召集要求權者 指名申請에 總會 召集發議가 있었읍니까 없었읍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무슨 뜻인지 잘…

○盧武鉉委員 勞動者들이 總會召集 發議를 했읍니까 안했읍니까? 總會召集 發議는 있었읍니까 없었읍니까? 勞動者들이 申請할 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그것이 未備됐었읍니다.

○盧武鉉委員 그것이 어떻게 未備됐다는 것입니까? 總會召集 發議自體가 없었다는 것입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우선 組合長한테 3분의 1이상의 署名으로서 組合總會의 開催要求를 하고 그것을 組合長이 기피하거나 회피했을 경우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盧武鉉委員 그런 사실이 없었읍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그런 사실이 없다고 저희는 보았읍니다.

○盧武鉉委員 그렇게 보았어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예.

○盧武鉉委員 내가 지금 하도… 여기와서 質問하는 것이 실없는 일이라서…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다시피 個人的으로 電話를 했었는데… 그럴 사유가 있으면 補完을 시키든지 이렇게라도 좀 도와주든지… 하도 내가 실없고 같잖아서 書類를 지금 만들어 왔는데…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그런데 사실은 盧委員님!

○盧武鉉委員 문제는 그런 것 아닙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저희가 어느 一方에 서서 偏頗的으로 일을 處理하지는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盧武鉉委員 요컨대 갈등이 있을 때는 總會召集 發議를 規約上에 2분의 1만하면 되도록 하게 되어 있읍니다.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3분의 1이면 總會召集 要請을 할 수 있읍니다.

○盧武鉉委員 그런데 代議員會에서 總會召集 發議를 할때는 2분의 1로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어떻든 처음부터 要件을 未備하고 있으면 要件을 未備했다고 指摘해서 가서 해오게 해야지 쓸데 없이 합의나 붙여가지고 시간 벌게 하고 시간 벌어가지고 또 세월보내고 工作하고 지금까지 工作으로 대충 됐는데 지금 現代가 工作으로 안먹혀 들어가니까 지금 숙을 맛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 지금 붙이고 앉아있잖아요? 내가 이 件에서만 당했으면 말안해요. 現代自動車… 昨年 8月에 申請했던 것 審判請求에 의해서 勞動部에 올라왔는데 귀신같이 棄却해 버렸읍니다. 거기에도 棄却할 事由가 무엇이 있읍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읍니다.

○盧武鉉委員 그 때도 1萬800名이 署名을 했었어요 또 목청을 높히는 내가 또 잘못입니다. 내가 깜빡 잊었어요. 또 말을 하면 효험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이 자리가 뭐 의미있는 자리인줄 알고 내가 깜빡 다시 잊었읍니다.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盧委員님! 사실은 저희는 성의껏은 일을 處理하고 있읍니다.

○李海瓚委員 한가지만 質問을 하지요.

기왕에 지난번에 常任委할 때에 勞動部에서 안나와서 그러는데 三星重工業하고 言論勞聯問題를 당시 勞使指導官만 계시고 勞動部의 關係職員이 없어서 答辯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었지요?

三星重工業의 경우는 上級團體에 加入할 의사도 없고 認准證도 없는데 勞組設立申告書를 發付했지요? 그래가지고 그 勞組設立申告書때문에 다른 勞組가 設立될 수가 없읍니다.

言論勞聯의 경우는 그것이 없어서 申告畢證을 내줄 수 없다 라는 것이 勞動部의 지금까지의 方針이었읍니다. 이 두個가 서로 상반되는 모순된 것이 현실에 두個가 존재하는데 勞動部가 지금 어느것이 勞動部의 基本方針인가를 제가 그때 물어보았읍니다. 그때 勞使指導官만 계시고 責任者가 없어서 答辯을 못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長官 나오셨으니까 둘중의 하나가… 두개 다 勞動部의 指針입니까? 그 중에 어느 것이 勞動部의 基本方針입니까? 말씀을 해보세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勞政局長 答辯드리겠읍니다.

사실은 그 言論勞聯은…

○李海瓚委員 긴 이야기할 것 없이 어느 것이 勞動部의 方針인가 간단명료하게… 긴 이야기 해보아야 소용없읍니다. 제가 勞動部를 상대로 해서 긴 이야기 듣고 싶지도 않고…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言論勞聯은 저희가 직접 處理를 했고 三星重工業은 慶尙南道에서 處理를 했읍니다.

그런데 이 두가지 다 저희 指針에는 합당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李海瓚委員 어떻게 합당합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言論勞聯의 경우는 소속된 聯合團體의 加入與否를 확인하기 위하여 聯合團體의 加入認准證을 확인을 하도록 基礎的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聯合團體가 遠隔地에 所在하였거나 單位勞動組合이 同種의 産業別 聯合團體에 加入하려 했으나 적법한 사정을 갖추었음에도 聯合團體에서 當該 勞動組合의 加入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同 聯合團體에 대하여 加入을 하려 한 사실을 입증하는 書類등에 의하여 設立申告證을 交付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李海瓚委員 三星重工業은 그렇게 해서 나갔다는 말입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예. 그렇읍니다.

○李海瓚委員 勞政局長! 三星重工業의 勞組組合長이 그날 뭐라고 答辯했는 줄 알아요? 三星重工業의 勞動組合委員長이 金屬勞聯에 자기는 加入할 의사가 없다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立法審議官! 당시 速記錄좀 가져오십시오.

勞使指導官이 그날 계셨으니까 그 勞組委員長이 金屬勞聯에서는 자기를 이용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組合費도 낼 생각도 없고 金屬勞聯에 加入할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勞動部勞使指導官 金相男 예.

○李海瓚委員 勞政局長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答辯하신 것하고…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그 당시에는 加入願書 寫本을 첨부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李海瓚委員 아니 엊그저께 나와서 자기는 加入할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그 당시에는 加入願書寫本을 첨부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設立申告 당시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盧武鉉委員 지난번 이 常委에서 말입니다. 三星重工業에 관해서 總會가 있은與否 加入意思를 上級團體에 도달시킨 여부 기타 소위 設立申告書에 必要的 記載事項에 관해서 그것의 事實與否를 조사해가지고 그 사실이 虛僞인 것이 밝혀지면 設立申告書類 내었던 것을 取消할 수 있게 되어 있는 施行令 規定이 있음을 내가 들었읍니다.

그래서 조사해가지고 報告하라고 그랬는데 報告도 안해주고 지금와서 그런 이야기 하면 어찌합니까?

지금 그 法典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지금 내가 펴서 바로 읽어드릴께요. 이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基本的으로 審査要件을 實質的 審査까지 하게 되어 있는 規定이라 별로 아름답지 않아서 인용을 하지를 않았는데 이것을 내가 指摘을 해가지고 지난번 會議에서 고치라고… 조사해가지고 報告하라고 이야기를 했읍니다.

거기에 根據해서 不當勞動行爲가 되는가 與否를 조사해서 處理하라고 그렇게 이야기 했읍니다. 그런데 싹 깔아뭉개고 지금 와가지고 上級團體에 加入하려고 했는데 加入을 안받아줄 경우라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盧委員님! 제가 法典을… 勞動組合法施行令 第8條입니다.

施行令 8條에 보면 그 設立申告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設立申告書를 반려하여야 하며 2·3號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0日間의 期間을 정하여 補完을 요구하고 그 期間에 이를 履行하지 아니한 때는 設立申告書를 반려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1號는 이것은 반려事由입니다. 그 設立하고자 하는 勞動組合이 法 第3條 但書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즉 勞動組合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두번째는 設立申告書에 規約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設立申告書 또는 規約의 記載事項中 漏落 또는 虛僞事實이 있는 경

우 세번째는 任員의 選擧 또는 規約의 制定節次가 法 第19條 第2項 第3項 또는 法 第23條의 規定에 違反되는 경우 이렇게 明示的으로 規定을 해놓고 있읍니다.

○盧武鉉委員 그 다음 2項 한번 읽어보십시오.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勞動組合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 申告證을 交付받은 후 第1項 各號의 1에 의한 設立申告書의 반려 또는 補完事由가 발생한 경우에는 行政官廳은 30日間의 期間을 정하여 그 是正을 요구하고 그 期間內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當該 勞動組合에 대하여 이 法에 의한 勞動組合으로 보지 아니함을 通報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盧武鉉委員 그렇지요. 그런데 위의 2號에 보면 「設立申告書에 規約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申告書 또는 規約의 記載事項中 漏落 또는 虛僞事實이 있는 경우…」 들어있지요? 漏落 또는 虛僞事實이라는 것은 上級團體를 記載했을때 加入할 의사도 없고 加入願書도 提出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붙여 놓으면 虛僞事實이 아닙니까? 이것이 발견되면 30日以內에 빨리 補完하라고 하고 안하면 勞動組合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通報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분명히 보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이것 무슨 答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調査했으면 했다 안했으면 안했다… 答도 없고 그래놓고 三星의 김무연씨가 만든 유령勞組가 명백한 그 事件에 관해서 그 組合 會議錄과 加入願書의 글씨가 누구 것인지 한번 調査해 보셨읍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그것은 調査를 못했읍니다. 안했읍니다.

○盧武鉉委員 할 의사가 없으니까 안한 것이지요? 만천하가 알고 있는 사실을 그것을 왜 調査를 못합니까? 온 세상사람은 다 아는데 勞動部만 모르고 調査못한다니까 이것이 미칠 노릇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말이 생기고 質疑하나마나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별놈의 변명을 해도… 大宇自動車事件에 관해서 棄却事由가 있었다고 별 변명을 다해도 우리가 못 알아 듣습니다.

現代重工業에 대해서 별 변명을 다해도 勞動者가 안 믿는 것입니다.

1萬2,000名 勞動者들이 署名 못받아서 지금까지 申請안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날 勞動者들이 意識狀態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責任을 스스로 지고 있는 사람이 와 가지고 이 자리에서 아주 基本的으로 방금 돌아서면 탄로날 거짓말이나 하고… 그것이 局長이요? 사람들이 自尊心이 있어야지… 입 아픕니다.

○委員長 金令培 이상입니까?

○盧武鉉委員 예.

○委員長 金令培 委員長으로서 記錄上 確認할 일이 있읍니다.

勞使指導官 金相男씨 나오시지요.

金指導官은 지금 指導官에 부임한지 몇 個月됐읍니까?

○勞動部勞使指導官 金相男 1個月 조금 넘었읍니다.

○委員長 金令培 그 전에는 어느 職責에 계셨읍니까?

○勞動部勞使指導官 金相男 光州地方勞動廳長이었읍니다.

○委員長 金令培 그러면 勞動部 勤務는 몇 年됐읍니까?

○勞動部勞使指導官 金相男 17年됐읍니다.

○委員長 金令培 아까 李康熙委員 質疑에 答辯하는 가운데에 88年 즉 昨年 10月5日 서울地下鐵 勞使間에 10個項의 合意覺書 作成된 것이 있지요? 그 중에서 4個項이 履行이 되지 아니해서 현재 紛糾가 발생을 했읍니다. 그 4個項이 今年1月1日부터 施行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요?

○勞動部勞使指導官 金相男 예.

○委員長 金令培 그래서 88年末까지 團體協約 不履行을 司法處理했읍니다 이렇게 答辯했읍니다.

○勞動部勞使指導官 金相男 예. 그렇게 答辯했읍니다.

○委員長 金令培 인정하지요?

○勞動部勞使指導官 金相男 예.

○委員長 金令培 어떻게 司法處理했읍니까?

○勞動部勞使指導官 金相男 그것은 訂正하겠읍니다.

○**委員長 金令培** 이것을 우선 어떻게 處理했는가 안했는가 그것부터 얘기해요.

○**勞動部勞使指導官 金相男** 그것을 제가 잘못 알고 答辯을 올릴 것으로 그런 사실이 없음을 다시 報告드립니다.

○**委員長 金令培** 다시 말하면 虛僞答辯했어요. 그런 사실이 없지요?

○**勞動部勞使指導官 金相男** 예.

○**委員長 金令培** 虛僞答辯했어요? 앉으세요.

長官한테 묻습니다.

部下職員이 實務에 관계되는 내용을 보다 더 자세하게 알기 때문에 대신 答辯하는 경우가 있읍니다. 그 部下職員이 答辯하는 내용에 있어서도 어디까지나 長官이 國會에 대한 責任을 집니다.

그것 인정하십니까?

○**勞動部長官 張永詰** 예.

○**委員長 金令培** 그렇다고 하면 部下職員이 答辯하는 가운데 잘못된 答辯이 있다고 할 때에는 國會에 대한 責任이 있다고 할 때에는 國會에 대한 責任을 지고 있는 長官은 訂正해 줄 義務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勞動部長官 張永詰** 예.

○**委員長 金令培** 그런데 어째서 虛僞答辯하는데 訂正을 안했읍니까?

이것이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 엄청난 事件의 使用者側에서 協約內容을 履行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紛糾가 발생했고 그 履行하지 아니한 部分에 대해서 司法處理를 하지 아니했는데도 불구하고 司法處理했다 이렇게 答辯하는 수가 있읍니까?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國會 會議錄에 記錄上 남는 것입니다. 歷史의 記錄에 이것을 訂正하지 않으면 이 勞動委員會 存在意味가 의심스럽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勞動部長官 張永詰** 예. 알겠읍니다. 내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전에 3月14日字인가 그런 答辯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訂正한다고 말씀을 옳게 못드린 것을 내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委員長 金令培** 그래도 중간이라도 訂正發言이 나올까 기다렸는데 質疑 다 끝나고 한 무렵에도 아무 얘기가 없어요.

○**勞動部長官 張永詰** 죄송합니다. 여러가지 經驗이 없어서 그런 것같습니다.

○**委員長 金令培** 아울러서 묻습니다.

여기 報告書에 보면 88年10月5日 勞使가 다음 10個項에 合意하고 合意覺書作成 괄호하고 合意覺書內容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合意覺書라고 하는 것은 아까 委員님들 質疑答辯가운데에 團體協約으로 인정하는 質疑와 答辯이 진행이 됐읍니다.

이것이 團體協約으로 인정되는 것이지요?

報告書에는 合意覺書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法律用語로 團體協約으로 인정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團體協約과 동일하게 볼 수 있읍니다.

○**委員長 金令培** 法的으로 效力을 발생하지요.

만일에 이것을 違反했을 때 不當勞動行爲에 해당이 됩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合意事項 不履行을 不當勞動行爲라고 까지는 보기 어렵습니다.

○**委員長 金令培**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團體協約違反時 處罰規定이 있읍니다. 이것에 의해서 勞動部에서는 司法處理를 해야지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예.

○**委員長 金令培** 그렇게 하지도 아니하고 司法處理했다 이렇게 虛僞答辯했는데 그것은 지난간 얘기니까 되풀이 하지 않습니다.

團體協約違反때에는 어떤 處罰規定內容이 있어요?

그것 얘기해봐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2年懲役 1,500萬원以下의 罰金입니다.

○**委員長 金令培** 그런데 그동안 왜 長官! 告發措置안했읍니까?

왜 司法處理를 아니했느냐 이것입니다.

○**勞動部長官 張永詰** 3項에 대해서는 勞使間의 利害의 差異때문에 그 동안에 죽 다툼이 있는 것같읍니다. 그래서…

○**委員長 金令培**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왜 司法處理 아니했냐고 質問했는데 그

要點에 대한 答辯만 하시면 돼요.

○盧武鉉委員 그 밑에서 써주는 것 거짓말 이니까 그것보고 자꾸 믿지 마세요.

○李海瓚委員 지난번 國政監査에서 다 인정한 사실인데 그것을…

○盧武鉉委員 會議錄 듣고 나올까요?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기치려다가 들킨 것인데요.

○勞動部長官 張永詰 그래서 2月28日字 勞組에서 告發했던 서울東部事務所 調査를 하고 있읍니다.

그 전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委員長 金令培 왜 司法處理를 아니했느냐 하는 것을 물었읍니다.

이것은 政策的인 答辯이 필요한 것입니다.

○勞動部長官 張永詰 그 전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미처 몰랐읍니다.

○委員長 金令培 몰라요?

○勞動部長官 張永詰 2月28日 告發했기 때문에 지금 調査중입니다.

○李海瓚委員 그것은 勞組에서 告發한 것하고 勞動部에서 왜 團體協約不履行한 것을 司法處理를 안 했느냐 하는 것을 委員長이 質問하잖아요!

○委員長 金令培 가만히 계세요. 長官! 이 이야기를 質問하는 것은 委員長으로서 司會만 보면 되는데 왜 政策質疑性의 質問을 또 하느냐? 이것 엄청난 중요한 事件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모든 事件은 原因없는 結果가 없읍니다.

오늘날 이 勞使紛糾 서울地下鐵公社의 이 紛糾 爭議發生의 原因을 살펴봐야될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왜 發生했느냐 그러면 團體協約不履行때문에 發生이 된 것이에요. 不履行한 側은 어디냐 使用主側 서울地下鐵公社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 더 물어보지요. 서울地下鐵公社의 爭議發生을 즈음해서 盧泰愚大統領은 談話發表한 일이 있읍니다.

앞으로 勞使關係에 있어서 違法行爲는 勞使間 누구를 막론하고 依法嚴斷하겠다… 長官! 기억하시겠지요? 行政府에 계시니까…

○勞動部長官 張永詰 예.

○委員長 金令培 그러면 使用者側 違法한 事項도 엄격히 依法處理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勞動部長官 張永詰 알겠읍니다.

○委員長 金令培 그런데 왜 勤勞者들 잘못하는 것만 依法處理하려고 하느냐 솔직히 이야기해서 無賃乘車를 유도하고 이것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잘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大統領이 談話로써 그런 것을 發表했을 때에는 이 政府의 政策指標를 發表한 것입니다.

그러면 結果的으로 大統領은 거짓말 食言을 한 결과가 되었읍니다. 그러면 大統領이 意圖的으로 食言을 했느냐 大統領은 그러한 意圖가 없었는데 勞動部長官 또는 서울市內務部 이런데에서 거짓말 大統領을 만들었느냐 이런 문제가 뒤따릅니다.

이 점에 대해서 行政府에 계시는 長官께서는 食言하는 大統領을 만들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勞動部長官 張永詰 委員長께서 이 勞使 공히 法秩序에 따라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서울地下鐵勞組에 있어서는 이 使用者側에서 團體協約不履行에 대한 自體告發이 없었고 제 자신이 더 여기에 대해서 3項하고 그래가지고 서로 勞組側하고 地下鐵公社하고 意見에 어떤 견해 차이가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報告를 받았읍니다.

그래서 委員長님이 말씀하신 그 事項에 대해서는 내가 다시 한번 내용을 알아보고 또 하나는 勞組가 2月28日날 社長에 대해서 告發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調査하도록 하겠읍니다.

○委員長 金令培 調査問題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무슨 調査입니까? 政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만 남은 것입니다.

○勞動部長官 張永詰 알겠읍니다.

○委員長 金令培 다시 한번 물어보지요. 지금 3月7日날 서울市長과 勞組代表의 協議結果 서울市가 勞組의 要求事項을 대폭 수용하였으나… 여기 報告書입니다.

市長의 保證署名問題로 결렬 그러면 勤勞者들이 法的인 使用主는 會社社長인데 서울

市長의 保證署名을 요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答辯 拒否합니까?

○勞動部長官 張永喆 아닙니다. 答辯拒否가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고 있읍니다.

○委員長 金令培 무슨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대신 答辯할까요?

○勞動部長官 張永喆 이 團體協約에 대한 不履行은 물론 해석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있지만 勞組側에서 金命年社長의 協約에 대한 合意書가지고는 못 믿겠다는 뜻으로서 해석합니다.

○委員長 金令培 그렇지요? 다시 말하면 昨年 10月5日날 10個項의 合意覺書가 履行되지 않고 있으니까 그 履行하지 않는 것은 會社社長의 不履行입니다. 그러니까 會社社長은 믿을 수가 없으니까 서울市長 당신이 保證署名을 해주시오. 이 이야기 아닙니까?

타당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인정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不應해서 더욱 惡化가 되었읍니다.

그러면 나는 勞動部長官도 閣僚입니다. 國務委員이시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인데 3月10日 會社社長이 組合長등 勞組幹部 23名을 無賃乘車實施와 관련 警察에 告訴했어요.

이것을 取下해 달라고 하니까 안해주어서 더 惡化되었지요. 그러면 勞動部에서 會社側에 團體協約不履行을 司法處理를 그것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地下鐵公社는 서울市傘下機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政府傘下機關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모순이 없읍니다.

그러면 衡平의 原則에 의해서 이 紛糾를 해결하려고 하면 이런것도 取下를 하든가 아니면 會社側도 司法處理를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 政府도 公信力을 얻게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平和民主黨 統一民主黨 黨舍에 700名 500名 서울市地下鐵公社 勤勞者들이 들어가 있다고 이 報告書에 나타나 있읍니다.

아마 平民黨 民主黨 요즘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아! 勤勞者들 오는 것 바람직한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강제로 쫓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러면 이 政府가 警察力을 또 平民黨이나 民主黨 黨舍에 投入을 해서 催淚彈쏘고 티뜨려 가지고 다 끌어낼 작정입니까?

長官! 催淚彈쏘고 警察投入해가지고 다 끌어낼 거예요? 그것 어렵지요?

○勞動部長官 張永喆 예.

○委員長 金令培 어렵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職場에 復歸가 되지 아니하고는 지금 地下鐵은 正常運行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분명하지요?

그런데 이 地下鐵이 正常運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政府나 또 이 國會次元이나 모든 政黨이나 市民이나 다 그것은 갈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妥協해야지요? 妥協하려고 하면 서울地下鐵公社에 대한 司法處理를 안하면서 이렇게 勤勞者들만 때려잡는 식으로 해서는 해결이 안 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좀더 大統領한테도 이 실정을 建議하시고 이래서 해결이 될 수 있는… 實質的인 해결이 될수 있는 이런 方案이 모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大統領에게 建議하고 事實上 해결할 수 있는 方案을 政府가 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실렵니까?

○勞動部長官 張永喆 關係部處하고 協議를 하겠읍니다.

○委員長 金令培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안하면 이것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이상입니다.

더 質疑하실 委員 안계시지요?

金炳龍委員 말씀하세요.

○金炳龍委員 大宇精密 勞使問題에 대해서 오늘도 國會에서 李仁濟委員이 仲裁를 하고 또 政府側도 같이 한 것으로 아는데 오늘 제가 같이 參席을 해서 會社側이나 또는 勞動組合側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서로가 主張點이 맞서있다고 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아까 여러委員들이 勞動部가 과연 얼마만큼 指導 調停役割을 해 주느냐 또는 勞動部 次元에서 과연 이 문제를 解決하는데

集中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관심있게 보았는데 사실은 政府가 이러한 문제를 解決하는데 集中的으로 解決해야 되겠다고 하는 意志의 表現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現代重工業의 문제도 國會의 李相洙委員이 이를 仲裁하려고 일전에도 노력을 했는데 그것도 또 國會만이 하는 것도 아니고 政府側의 勞動部次官이 같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도 政府次元에서 積極的으로 나서서 國會보다도 勞動部가 직접 責任이 있기 때문에 좀더 誠意있게 나서서 調停을 할 것으로 보았는데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오늘도 大字精密問題도 딱 부딪혀보니까 그러한 인상을 받았읍니다.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와같이 勞動部가 이런 勞使問題가 繼續的으로 長期化된 문제를 이렇게 그저 江건너 불보듯이 보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을 많이 받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것을 하루속히 脫皮해서 직접 責任있는 指導와 調停을 하도록 해주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勞動部에 부탁을 하고 現代重工業의 아까 말씀드린 3月21日 會社側과 勞動組合側이 서로 부딪혀서 不祥事가 일어난 사실… 그때에 約40名 내지 50名 정도가 重負傷者가 있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調査도 아직 하나도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勞動部가 現地 事務所에 提示를 해서 救社隊側에서 그와같은 暴力行爲를 과감하게 해서 많은 組合員들이 不祥事를 당하고 또 거기에는 칼로 찔려가지고 아주 크게 負傷 당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調査를 해서 立件시킬 사람 立件하고 이렇게 해서 結果를 좀 알려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읍니다.

끝으로 서울地下鐵問題는 여러 委員님들과 委員長님께서도 아주 核心的인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해 주셨읍니다. 그런데 3月16日 前날 15日날은 勞動部가 과연 어떤 指導와 調停役割을 했는지 그것이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과연 그와같은 문제가 그 이튿날 16日 새벽이면 全組合員들이 전부 罷業에 加擔해서 1千萬 市民의 발을 묶는 것 같은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15日날 勞動部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 이것을 實務局長이나 누가 직접 15日 地下鐵公社와 또는 서울市와의 指導 監督 또는 調停을 했는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한 마디만 해 주세요.

○勞動部長官 張永喆 서울地方廳長이 직접 가서 그렇게 調停하고 勞組委員長도 만나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金炳龍委員 알았읍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는 과거에 勞動運動을 한 사람으로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地方廳이나 地方所長이 무슨 특별한 權限이 있고 權力이 있읍니까? 적어도 그러한 國家的인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長官이 직접 指揮 總監督을 해야지 어떻게 서울支廳에다 맡겼다는 것은 反省해야 됩니다.

그리고 蔚山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와같이 거기에 調査團을 파견했다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勞動部에서는 反省을 해야 합니다. 무슨 調査團이 필요합니까? 現地의 事務所에서 調査를 해서 報告해 주는데 調査가 뭐가 필요해요? 但 있다고 하면 收拾對策委員會을 구성을 해서 나가서 직접 收拾하는데 앞장서야지 調査를 해서 뭐할 겁니까? 결과가 뭡니까? 이와 같은 勞動部의 方針은 앞으로 좀 탈피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와 같은 안일한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고 보기 때문에 勞動部로서는 이번 기회에 뭔가 좀 새로운 차원에서 정말 一線에 직접 나서서 勞使問題를 직접 확인하면서 勤勞者들이 억울하면 그것을 보호해주고… 오늘도 여기 大字精密 하는 것을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아직 勞使가 對等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읍니다. 한 쪽을 어린아이 취급을 하는 이따위 思考方式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對話가 안되는 것입니다. 勤勞者들은 人間다운 待遇를 받자는 겁니다. 다른게 없어요. 勞動部가 앞장서서 해 줘야지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勞動部가 覺醒하고 새로운 차원에서 指導와 調停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金令培 더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시지요? 그러면 이상으로 主要勞使紛糾懸案報告와 그에 대한 質疑를 모두 마치겠읍니

다.

여러 委員님들 그리고 勞動部長官이하 勞動部幹部 여러분 長時間 수고많으셨읍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1,000萬이 넘는 서울市民의 主要交通手段인 서울地下鐵問題가 하루속히 해결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며 오늘 會議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散會를 宣布합니다.

(21時3分 散會)

○出席委員

金令培	金東仁	南載熙
盧仁煥	安瓚熙	李康熙
李石燮	鄭宗澤	李相洙
李海瓚	韓光玉	盧武鉉
李仁濟	金炳龍	

○委員아닌出席議員

金元基

○出席專門委員및立法審議官

專門委員	卓英鎭
立法審議官	宋芳燮

○出席國務委員

勞動部長官	張永喆

○出席政府委員

勞動部

次官	李龍俊
企劃管理室長	鄭東佑
勞政局長	具然春
勤勞基準局長	金基德
産業安全局長	尹錫春

○政府側參席者

勞動部勞使指導官	金相男